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정성호

2021.1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정성호

2021.1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정보는 개별 공개 플랫폼에 공개함과 동시에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
 - 최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20년 국회에서는 국가재정, 지방(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공개 시스템에서 산발적·공급자 위주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고,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정보공개 관련 법률제정(안)을 요구함
 - ’20년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20.3)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 대상 기관을 범주화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였지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음

- (필요성)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포괄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요국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해 함의를 도출할 필요
 -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어떻게 연계해 공개할지가 중요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정성호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or.kr

-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한 뒤 대안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재정정보공개 방향성(포괄범위,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공개기제)을 설정하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

2.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

- 정보공개를 위한 포괄범위, 공개주기, 공개 기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 재정정보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할 필요
 - (한국)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 열린재정 등에 공개,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정보공개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를 연, 월, 일 단위로 공개
 - (미국)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ATA Act) 등에 근거해 USAspending에 공개, 정보공개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공개
 - 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2만 5,000달러(\$) 이상 시 공개, 현재는 모든 사업을 공개
 - (영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data.gov.uk 등에 공개, 정보공개 포괄범위는 공공 부문 단위 예산은 프로그램 단위 및 보조금은 건별 단위, 월 단위로 공개, 계약 및 조달자료는 중앙 1만 유로(£), 지방 500유로(£) 이상 시 공개
 - (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연방 및 주)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공개 포괄범위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로 공개
 - (프랑스) 재정조직법(LOLF) 및 조직법률에 근거해 정부행정정보공개 사이트(별도

공개 플랫폼 없음)에 공개, 정보공개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단위가 작성하는 예·결산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이며, 매 예·결산 과정에서 공개

구분	정보공개 법적 근거	정보공개 포괄범위, 공개단위	정보공개 주기	정보공개 기제
한국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중앙, 지방(교육재정) 단위 - 예산(세부사업) - 보조금(내역사업)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 (신설, '20.7~)	연, 월, 일 단위	열린재정(지방포함)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미국	연방재정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정부자금책임성에 관한 법률(2008)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14)	• 연방정부 단위 -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 보조금(2008년 이전 \$25,000 이상, 현재 모든 자금 집행)	연, 월 단위	USAspending 재정데이터 데이터랩
영국	정보자유법(2005)	• 공공부문 단위 - 예산(프로그램) - 보조금(건별) - 계약 및 조달(중앙 1만£ 지방 500£ 이상 건별)	월 단위	data.gov.uk (공공부문) OSCAR(중앙재정) GGIS(보조금)
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	• 연방 및 주정부 단위 - 예산 및 결산 -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	연방 통계청 및 주 통계청 홈페이지
프랑스	(국가) 재정조직법(LOLF) / 조직법률 (지방) 지방단체 일반법전	• 일반정부 단위 -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	공식 예·결산 절차	별도 플랫폼 없음 행정정보공개 사이트 www.data.gouv.fr 고등재정위원회 www.hcfp.fr

3. 주요국 비교분석에 근거한 정보공개 방향성 설정

□ 재정정보 공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함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순 통합정보라 보기에 제약,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
-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 제약(수지 및 채무: 중앙 2020년, 지방 2019년)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수입(국가예산 총수입, ~2021) 지출(국가예산 총지출, ~2021) 수지(통합, 관리재정수지, ~2020) 채무(D1, ~2020)	세입(전국 세입예산, ~2021) 세출(전국 세입예산, ~2021) 수지(전국 지방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채무, ~2019) 재정여건(재정자주도, ~2021)	세입(지방교육재정세입, ~2021) 세출(지방교육재정세출, ~2021) 수지(지방교육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교육채무, ~2019) 재정여건(교육재정자주도, ~2021)

- (정보공개/재정통계작성) 공개의 포괄범위, 공개 단위 및 공개 주기, 공개 기제로 구분해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통계작성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
- (포괄범위) 우선 현행 체계를 유지,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단기 대안), 추후 일반정부 단위에 전면 적용하고, 공공부문 단위로 확장 적용(장기 대안)
-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현재와 같이 예산은 세부사업,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로 공개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공개주기는 현행대로 연, 월, 일 단위로 공개
- (공개기제) 기존 개별 공개 포털은 불가피하게 유지하되, 열린재정(통합 재정공개플랫폼)에 집계할 필요, 재정정보의 연계 구체화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재정통계작성)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재정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정보공개 목적과 동일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를 명확히 선정할 필요

목 차

I. 서론	1
II.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제	5
1. 미국	5
가. 법적 근거	5
나.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11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14
2. 영국	20
가. 법적 근거	21
나.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21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23
3. 독일	27
가. 법적 근거	27
나. 재정통계(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30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35
4. 프랑스	36
가. 법적 근거	36
나.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40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42
5. 종합	43

Ⅲ. 주요국 비교분석에 근거한 재정정보공개 방향성 설정	48
1. 재정정보공개 방향성	48
가. 포괄범위	49
나.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52
다. 공개기제	53
2. 정책적 함의	54
가. 정보공개	54
나. 재정통계작성	55
Ⅳ. 결론	57
〈참고문헌〉	59
부록	62

표 목차

〈표 2-1〉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의 주요 내용	28
〈표 2-2〉 주요국 정보공개 종합	47
〈표 3-1〉 열린재정_우리나라 재정현황 공개 목록	50
〈표 3-2〉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포괄범위	51

그림 목차

〈그림 2-1〉 USAspending 데이터 공개	11
〈그림 2-2〉 투명성 확보 기제	13
〈그림 2-3〉 DATA Act Broker 데이터 흐름도	15
〈그림 2-4〉 재정데이터 구성	16
〈그림 2-5〉 데이터 랩 구성	17
〈그림 2-6〉 예산기능별 시각화 정보	18
〈그림 2-7〉 data.gov.uk 화면	20
〈그림 2-8〉 OSCAR 화면	23

I. 서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개혁¹⁾을 추진하였다. 1998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빅뱅 방식의 3+1 재정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재정정보의 연계관리를 위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각기 다른 재정관리시스템(NaFIS, FIMSys 등)의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시스템(현재 dBrain)을 통합하였다.²⁾ 아울러 dBrain에 e-호조와 edufine 등을 연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체계적 연계가 제한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효율적 재정관리가 중요한 의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축적된 다양한 재정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즉, 재정정보의 활용, 특히 공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기존 법체계에 더해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만큼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재정정보공개체계를 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조차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재정당국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1)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top-down budgeting),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을 도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dBrain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지방교육청 등 단위에서는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을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K-edufine 구축이 완료되었고, dBrain과 e-호조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 행정안전부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운영 중이던 재정관리시스템을 e-호조로 통합(일원화)하였다.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회가 국가재정, 지방재정(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산발적·공급자 위주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해 재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제출하였다.^{3) 4)} 재정당국은 2020년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20.3)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 대상 기관을 범주화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였다. 다만 구체적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가의 재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송OO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해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함(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은 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은 재정정보의 비공개 결정 및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재정정보의 비공개 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재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4)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양OO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해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는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정의

재정정보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성과 및 정책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종합적인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둘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셋째,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는 예산 결정 및 재정관리를 위한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며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별 부서 수준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연계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더 좋은 재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재원의 합리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열린재정 등의 정보공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공개기제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

불법지출 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재정지출 정보 공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함(안 제5조).

나. 재정지출 정보의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재정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 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해 지침을 작성·고시해야 함(안 제8조).

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 정보를 등록·관리·공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재정지출 정보를 등록해야 함(안 제10조).

마.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과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15조).

정보를 공개한다면 재정정보를 어떻게 연계할지가 중요해진다.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의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한 뒤 대안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정보공개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개의 방향성(포괄범위,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공개 기제)을 설정하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세대 dBrain 등 시스템의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보공개를 위한 방향성(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연계로직’을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주요국의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제에 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정보공개 비교 분석에 근거한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II.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제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에 관한 국가별 비교 분석은 정보공개의 방향성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가별 비교 분석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해 법적 근거,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재정정보 공개기제에 관해 살펴본다.

1. 미국

가. 법적 근거

1) 예산법과 회계처리기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예산법안의 제출권 및 심의·확정권이 의회에 있고, 의회 내에서도 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수권법), 세출위원회(지출승인법) 상호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예산위원회는 전체적인 예산총액과 각 부문별 예산총량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을, 세출위원회(지출승인위원회)에서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심사한다. 미국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예산법을 통해 하향식 예산편성(top-down budgeting)이 이루어진다. 1990년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에 따르면, 국방·국제·국내 분야로 재량지출 한도를 설정하였으나, 1994년부터 전체 재량지출 규모에 대한 한도만 설정하였고,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에서는 국방·비국방·범죄예방 분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02년 8월에 균형예산법이 기간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교

통과 환경보전 분야를 제외한 지출한도가 사라졌고, 「지출통제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통해 교통 부문에 한해 지출한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법적 규율은 모두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속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산법적 규율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 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회계처리(계리)가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 각 예산회계와 기금(펀드)에 대한 개별적 보고를 강화하고, 각 부문별 운영 결과를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기초로 보고하고(유동성 확보),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근거해 비용과 수익을 시간별로 할당해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에 예산과 비교,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를 추가해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평가에 도움을 준다.⁵⁾

2) 정보공개 관련 법률

2006년 9월 26일 통과된 「2006년 연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이하 FFATA)」에 따라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MB)에 정부지출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료로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웹 사이트(통합지출정보시스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FFATA는 정부기관이 2만 5,000달러 이상의 연방자금을 배정받아 지출한 경로를 일반 국민이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10년간 각 정부기관이 받은 연방 자금의 규모, 거래내역 및 기타 상세내역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검색 가능한 웹 사이트’를 통해 재

정지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정부의 재정지출 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에 관리예산처 재정감독기구(OMB Watch)가 IT 사업비 지출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추가·개편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 이후 2008년 개정된 「정부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Government Funding Transparency Act)」에서는 정부의 자금을 처음으로 지원(수령)받는 수혜자에게 바로 그다음 수혜자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required prime recipients to report details on their first-tier sub-recipients for awards)를 규정하였다.

2014년 5월 9일 제정된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 Pub. L. 113-101, 이하 DATA법)」은 재정정보를 통합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DATA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재정자금에 대한 정보를 각 회계계정별(each appropriations account)로 각 예산사업(each program activity)에 지출승인된 예산액과 각 계정(each object class)별 지출승인된 예산액 등을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3조). 그리고 DATA법 제4조에 따르면, 공개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재정데이터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 정보는 검색 가능하고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며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searchable, platform-independent computer-readable format)로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4조).

SEC. 2.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 (1) expand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31 U.S.C. 6101 note) by disclosing direct Federal agency expenditures and linking Federal contract, loan, and grant spending information to programs of Federal agencies to enable taxpayers and policy makers to track Federal spending more effectively;

5) GASB(정부회계위원회,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No. 34.

6) 2007년 12월부터 통합지출정보시스템(USAspending, <http://www.usaspending.gov>)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2) establish Government-wide data standards for financial data and provide consistent, reliable, and searchable Government-wide spending data that is displayed accurately for taxpayers and policy makers on USASpending.gov (or a successor system that displays the data);
- (3) simplify reporting for entities receiving Federal funds by streamlining reporting requirements and reducing compliance costs while improving transparency;
- (4) improve the quality of data submitted to USASpending.gov by holding Federal agencies accountable for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data submitted; and
- (5) apply approaches developed by the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to spending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SEC. 3. FULL DISCLOSURE OF FEDERAL FUNDS.

- (a) IN GENERAL.—Not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and monthly when practicable but not less than quarterly thereaf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shall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n subsection (b) is posted on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section 2.
- (b) INFORMATION TO BE POSTED.—For any funds made available to or expended by a Federal agency or component of a Federal agency, the information to be posted shall include—
 - (1) for each appropriations account, including an expired or unexpired appropriations account, the amount—
 - “(A) of budget authority appropriated;
 - “(B) that is obligated;
 - “(C) of unobligated balances; and
 - “(D) of any other budgetary resources;
 - “(2) from which accounts and in what amount—
 - “(A) appropriations are obligated for each program activity; and
 - “(B) outlays are made for each program activity;
 - “(3) from which accounts and in what amount—
 - “(A) appropriations are obligated for each object class; and
 - “(B) outlays are made for each object class; and
 - “(4) for each program activity, the amount—
 - “(A) obligated for each object class; and
 - “(B) of outlays made for each object class.

자료: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 Pub. L, 113-101)」 제2조, 3조

그리고 DATA법 제4조에 따르면, 공개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재정데이터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 정보는 검색 가능하고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며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searchable, platform-independent computer-readable format)로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4조).

SEC. 4. DATA STANDARDS.

(a) IN GENERAL.—

- “(1) ESTABLISHMENT OF STANDARDS.—The Secretary and the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Federal agencies, shall establish Government-wide financial data standards for any Federal funds made available to or expended by Federal agencies and entities receiving Federal funds.
- “(2) DATA ELEMENTS.—The financial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common data elements for financial and payment information required to be reported by Federal agencies and entities receiving Federal funds.

(b) REQUIREMENTS.—The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 shall, to the extent reasonable and practicable—

- “(1) incorporate widely accepted common data elements, such as those developed and maintained by—
 - (A) an international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body;
 - (B) Federal agencies with authority over contracting and financial assistance; and
 - (C) accounting standards organizations;
- “(2) incorporate a widely accepted, nonproprietary, searchable, platform-independent computer-readable format;
- “(3) include unique identifiers for Federal awards and entities receiving Federal awards that can be consistently applied Government-wide;
- “(4) be consistent with and implement applicable accounting principles;
- “(5) be capable of being continually upgraded as necessary;
- “(6) produce consistent and comparable data, including across program activities; and
- “(7) establish a standard method of conveying the reporting period, reporting entity, unit of measure, and other associated attributes.

(c) DEADLINES.—

“(1) GUIDANCE.—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the Director and the Secretary shall issue guidance to Federal agencies on the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

“(2) AGENCIES.—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not later than 2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uidance under paragraph (1) is issued, each Federal agency shall report financial and payment inform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the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

(B) NONINTERFERENCE WITH AUDITABILITY OF DEPARTMENT OF DEFENSE FINANCIAL STATEMENTS.—

“(i) IN GENERAL.—Upon request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Director may grant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under subparagraph (A)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to report financial and payment inform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the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

“(ii) LIMITATION.—The Director may not grant more than 3 extensions to the Secretary of Defense under clause (i).

“(iii) NOTIFICATION.—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notify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and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and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I) each grant of an extension under clause (i); and

“(II) the reasons for granting such an extension.

“(3) WEBSITE.—Not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uidance under paragraph (1) is issued, the Director and the Secretary shall ensure that the data standards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a) are applied to the data made available on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section 2.

“(d) CONSULTATION.—The Director and the Secretary shall consult with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in establishing data standards under this section.

자료: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 Pub. L. 113-101)」 제4조

나.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단위를 근간으로 한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물론 보조금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예산의 공개 단위는 프로그램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2만 5,000달러 이상의 데이터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자금 집행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정보공개의 주기는 연, 월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일 또는 실시간 단위는 불가능하다. 예산 정보는 기능별, 개별 부처별로 각각 검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예산 또는 보조금별로도 회계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검색할 수 있고, 분기별·월별로도 나누어 검색 가능하다.

〈그림 2-1〉 USAspending 데이터 공개

Select a file type.

☒ Account Balances

☐ Account Breakdown by Program Activity & Object Class

☐ Account Breakdown by Award*

*Note: This file links agency financial data to award data. Columns related to award data will be blank when this linkage cannot be made.

Filter by Disaster Emergency Fund Codes (DEFCs).

(Optional)

Filter your data with codes related to supplemental appropriation bills targeting disasters and emergencies.

>

☐ COVID-19 Spending

Note: COVID-19 Spending account data is only available starting FY2020 P07. The DEFC is not applicable to Account Balance data. If you selected Account Balances under file type above, the DEFC column will not appear in the download.

Select a fiscal year and quarter.

FY 2021 ▾

Q1		Q2		Q3		Q4				
1 - 2	3	4	5	6	7	8	9	10	11	12

Note: The data included in the Custom Account Download was first collected in the second quarter of fiscal year 2017, per the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DATA Act). Financial data will not be available prior to that timeframe.

The Account Balances and Account Breakdown by Program Activity & Object Class files contain cumulative financial balances at the account and agency levels, as of the end of the quarter selected. The Account Breakdown by Award file contains every transaction reported at the account and agency levels, for the fiscal year through the end of the quarter selected.

자료: https://www.usaspending.gov/download_center/custom_account_data

미국은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표준화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OMB M-20-21 / OMB MPM 16-03 / OMB M-17-04 / OMB 18-16 등에 기초한다.

〈그림 2-2〉 투명성 확보 기제

Data Transparency

A program of the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DATA TRANSPARENCY MENU

Home

About the Data Transparency Program

+ Resources for federal agencies

Contact Us

RELATED LINKS

DATA Act of 2014

OMB M-20-21

OMB MPM 16-03

OMB M-17-04

OMB 18-16

Federal Spending Transparency

System for Award Management

FPDS-NG

TFM

USSGL

GTAS

자료: <https://www.fiscal.treasury.gov/data-transparency/DAIMS-current.html>

재정정보공개를 위해 중앙과 지방 등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인구조사국(Census Bureau)과 재무부(Treasury)는 미국 재건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구조사국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수집, 평가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사이트에서 미국 정부의 매년 예산과 분석보고서, 부록, 사업항목별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무현황표(Balances of Budget Authority)와 공공재정 데이터베이스(Public Budget Database)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⁷⁾

7) 미 연방 관보 공시(<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budget/2022>)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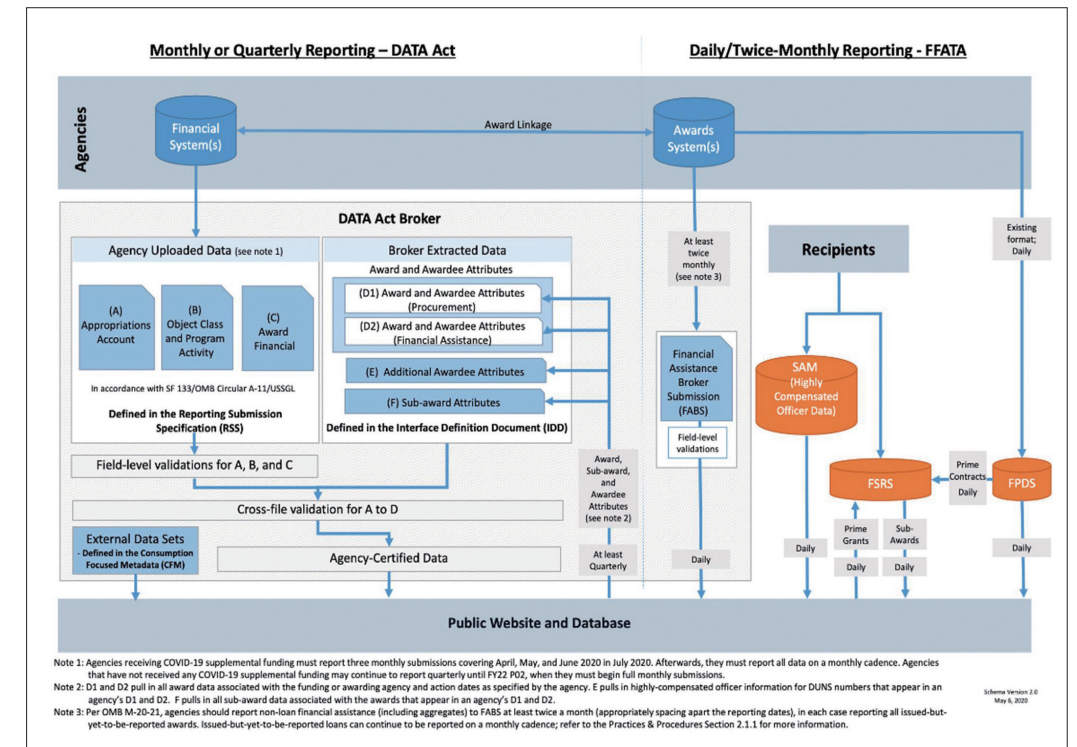
1) USAspending

USAspending에 포함된 자료는 연방자금의 지원(federal awards)을 받는 기관들로 법인(corporations), 협회(associations), 제휴회사(partnerships), 유한책임회사와 그 제휴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ir partnership),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s)와 기타 회사법인(any other legal business entities)과 주정부(states) 및 지방자치단체(localities)의 재정 관련 정보이다. USAspending 시스템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이름, 지원액, 거래 유형을 포함한 지원 정보, 자금관리 주체, 예산 사업(프로그램)의 출처 등 지원 기록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USAspending 웹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IT시스템인 공공조달 데이터 시스템(FPDS-NG: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Next Generation, www.fpds.gov), 연방보조금 지원 데이터 시스템(FAADS-Plus:Federal Assistance Award Data System PLUS), SmartPay,D&B(Dun & Bradstreet), CFDA(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를 통해 연방기관들의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FFATA 체계는 개별 부처 또는 기관이 일 또는 월 2회에 걸쳐 개별 부처 시스템에서 수혜자 정보 등이 수집되고,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DATA Act Broker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탑재해 부처별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합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USAspending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DATA Act Broker 데이터 흐름도



주: USAspending 탑재 정보는 연방조달시스템(FPDS), 입찰시스템(FABS), 사업자관리시스템(SAM), 하위사업자보고시스템(FSRS)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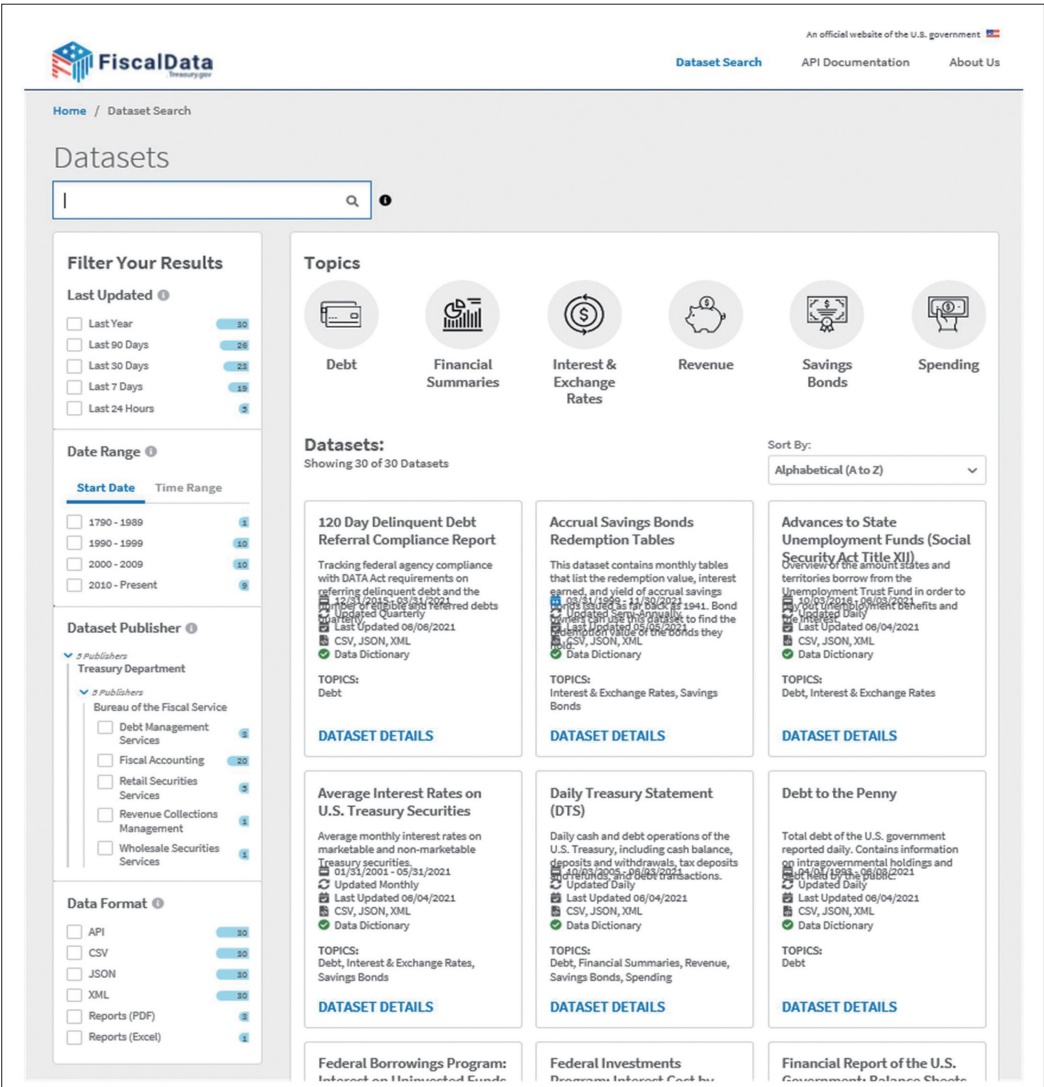
자료: <https://www.usaspending.gov/about>

2) 재무부 재정데이터(<https://fiscaldata.treasury.gov/>)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재정정보(Fiscal Data)를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재무부 산하의 재정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이다. 이 기관은 재무부령(Treasury Order 136-01)에 의해 2012년 10월 7일 설치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재정데이터(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를 공개하는 데이터셋 검색(Dataset Search)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셋은 국가부채(Debt), 재정정보 요약본(Financial Summaries), 이자율 및 환율(Interest & Exchange Rates), 재정수입(Revenue), 국가채권(Saving Bonds), 재정지출내역(Spending) 분야별로 30개의 데이터셋을 CSV(엑셀 파일), JSON, XML(Web),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 재정데이터 구성



자료: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

3) 데이터 랩

(<https://datalab.usaspending.gov/americas-finance-guide/>)

데이터 랩은 연방정부의 재정수입(Federal Revenue, 2020년 3조 4,200억 달러), 재정지출(Federal Spending, 2020년 6조 5,500억 달러), 재정적자(Deficit, 2020년 3조 1,300억 달러) 및 누적 국가부채(Federal Debt, 2020년 기준 26조 9,500억 달러 / 2019~2020년 증가분 4조 2,000억 달러) 등 4가지 항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 데이터 자료는 매달 재무부가 발표하는 자료(Monthly Treasury Statement)에 기초해 작성되고,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데이터는 인구와 가계 동향 추정치를 계산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쟁점별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자금, 학자금, 무주택자 분석, 연방공무원 정원 등을 분석하고 있고 공공조달 계약과 관련된 정보, 재정데이터의 시각화(Financial Data Visualization)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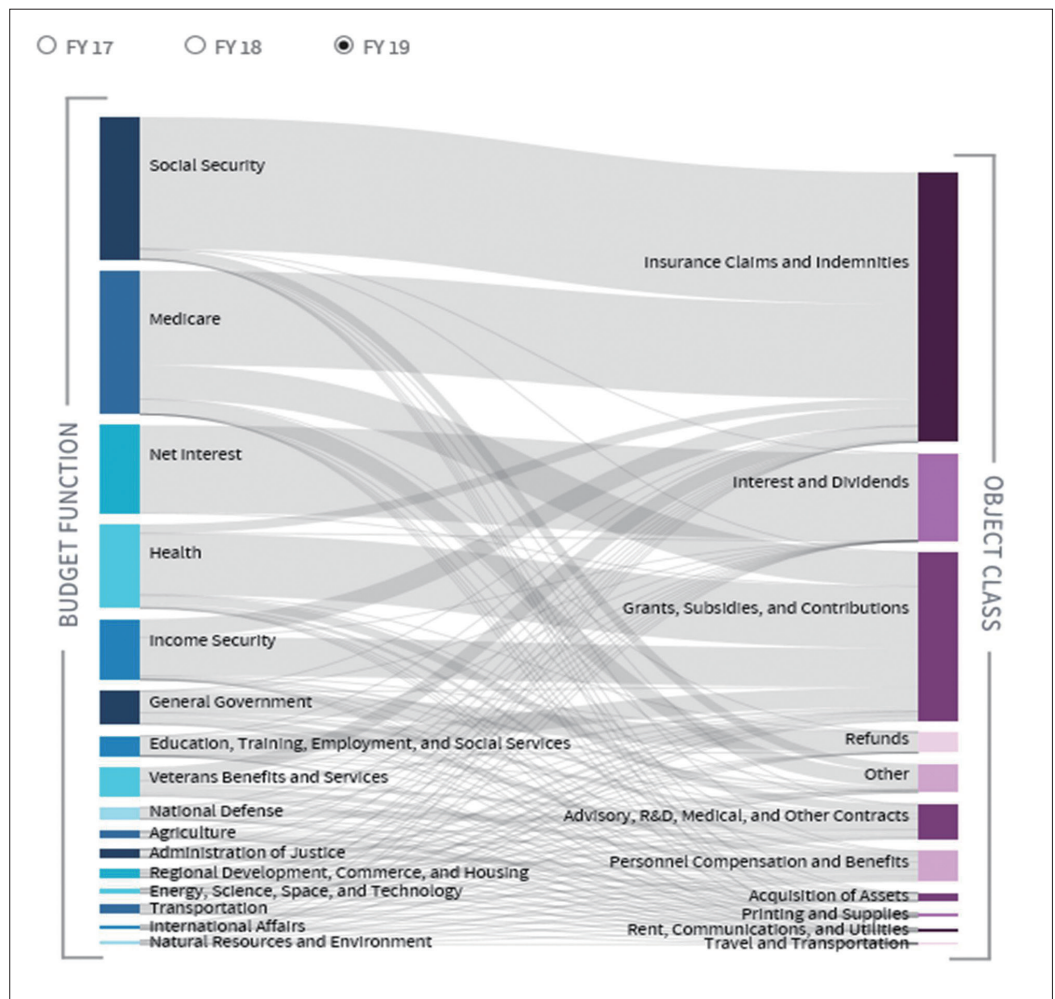
〈그림 2-5〉 데이터 랩 구성



자료: <https://datalab.usaspending.gov/>

아울러 예산기능별(Budget Function) 예산액 비중과 회계항목별(Object Class)로 예산액을 시각화해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연차별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2-6〉 예산기능별 시각화 정보



자료: <https://datalab.usaspending.gov/budget-function/>

연방회계정보에서 기관별 식별자(Agency Identifier, 3자리 번호, 예컨대 재무부는 091)와 주요 회계번호(Main Account Code, 4자리 번호, 예컨대 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0200)를 통해 각 기관별, 예산사업별로 예산액을 확인·식별할 수 있다.

What are federal accounts?

Federal accounts are found in the budget that the President submits to Congress for approval. Each federal account is comprised of a "family," or grouping, of specific account numbers known as Treasury Account Symbols (TAS), through which spending actually occurs. The accounts give you an idea of how agencies receive and spend congressional funding to carry out their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Interest on the Public Debt](#),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and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re examples of the more than 2,000 unique federal accounts of the U.S. government. Federal accounts also have associated Federal Account Symbols to identify them. For example,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has the Federal Account Symbol 091-0200.

With the size of the federal government, how are you able to identify unique accounts?

Federal accounts are uniquely identified by the Agency Identifier and the Main Account Code. These codes are required for agency financial reporting.

Agency Identifier (AID): This is a 3-digit number that identifies the agency responsible for a Treasury account ("091" in the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example above).

Main Account Code (MAC): This 4-digit number forms the basis of the federal account ("0200" in the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example above).

Each Agency Identifier should have at least one federal account associated with it, so the agency can conduct its function and carry out its mission. Despite the name, there are instances where an Agency Identifier is shared among more than one agency. In these cases, each agency within the shared Agency Identifier will still have at least one federal account of its own.

What does the TAS acronym mean?

A Treasury Account Symbol (TAS) is a code that identifies critical information about each transaction that agencies report, such as the length of time that the specific account is available for use by the agency. Like federal accounts, each TAS has an Agency Identifier and a Main Account Code, along with several other codes:

- Agency Identifier (AID): 3 digits, Identifies the agency responsible for a Treasury account. Assigned by Congress.
- Main Account Code (MAC): 4 digits, identifies the TAS type and purpose. It cannot be blank.
- Sub Account Code (SAC): 3 digits, identifies a sub-division of the TAS. It cannot be blank. A sub-account code of "000" means that the TAS is the parent account.
- Allocation Transfer Agency ID (ATA): 3 digits, identifies an agency that receives funds through an allocation (non-expenditure) transfer.
- Beginning Period of Availability (BPOA): 4 digits, identifies the first year that an appropriation account may incur new obligations. This is for annual and multi-year funds only.
AND
• Ending Period of Availability (EPOA): 4 digits, identifies the last year that an appropriation account may incur new obligations. This is for annual and multi-year funds only.
OR (if no BPOA or EPOA)
- Availability Type Code (ATC): 1 digit, instead of specific years, this one-letter code identifies the availability (or time period) for obligations to be made on the appropriation account. A TAS will have an "X" if there is an unlimited or indefinite period to incur new obligations.

In some cases, there may be multiple TASs in one federal account. In these instances, you can roll up to the federal account level by combining activity from all TASs that share a Main Account Code and Agency Ident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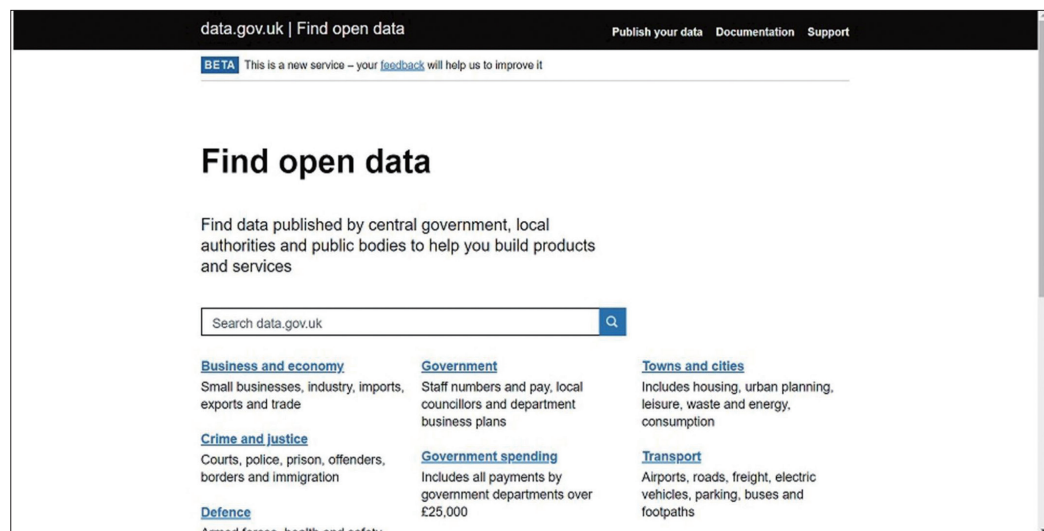
자료: <https://datalab.usaspending.gov/analyst-guide/>

2. 영국

영국은 당초 법률이 아닌 국가의 주요 정부 정책으로 재정정보공개를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5)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을 중심으로 재무부, 내무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창구는 data.gov.uk로 단일화되어 있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통일된 양식으로 집중해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Policy Area: Government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라는 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열린정부 시행계획에서는 관련 시스템 및 정보공개 세부를 구체화하며, 이에 따라 신규 시스템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7〉 data.gov.uk 화면



자료: www.data.gov.uk.

영국 정부의 재정정보는 대체로 각 부처별로 사용하는 재무관리 체계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를 정부 공동시스템인 OSCAR(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해 보조사업 전반까지 관리하면서 각 보조사업의 정보-사업자 정보-관련 재정정보까지 공시하게 되었다.

가. 법적 근거

영국은 2005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의 시행에 따라 재정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반 대중은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뿐 아니라 정책, 절차, 회의록, 연차보고서 등과 같은 일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나. 재정정보공개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영국의 정부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예산보고서와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발간한 경제·재정전망보고서는 웹 사이트(www.gov.uk)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별 공개기준은 지방정부 500파운드 이상의 건별 자료, 중앙정부 1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 및 조달자료이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 관청, 공공 의료기관과 주립 학교 및 경찰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공공자

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을 받는 자선단체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 기능을 가진 기관이나 치과, 건강요양원, 일부 방송국 등은 공공 업무와 관련된 일부 정보에 한해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자유법의 부속서(1)를 통해 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 또는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조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공개 대상 정보는 인쇄된 문서, 컴퓨터 파일, 편지, 이메일, 사진 및 소리, 영상 등을 포함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주체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영국 정부의 정보공개 웹 사이트(data.gov.uk) 데이터는 월별로 공공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개하며, 반기에 담당 공무원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보수를 받는지를 공개한다. 아울러 이곳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된다. 이곳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1,880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지출 데이터를 Contract Finder에 공개한다.

영국의 모든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접근 가능한 포맷을 규정하고 공개 일정을 관리할 규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공개정보 백서(Open Data White Paper)를 작성하고, 이 백서를 통해 방대하고 다양한 분량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을 확정한다.

정보공개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몇 차례에 걸쳐 보완되었는데, 이는 영국 열린정부 실행계획(UK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알 수 있다. 1차 계획(2011-2013)에서는 정보공개 원칙적 내용을 확인하였고, 2차 계획(2013-2016)에서는 G8 공공데이터 헌장, 국제 투명성 기구인 열린정부 협약(Open Government Partnership)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보조금 정보공개와 계약 표준화보조금 및 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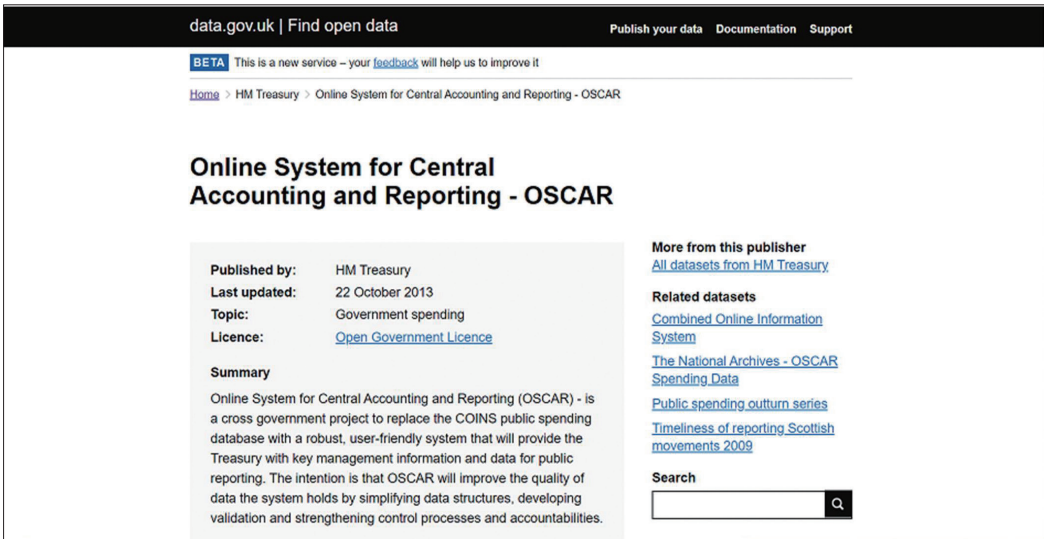
3차 계획(2016-2018)은 공공지출 정보공개 강화, 부패 방지, 재정정보공개를 위

한 인프라 투자 등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 정보공개와 관련해 보조사업 정보시스템(GGIS: Government Grants Information System)을 2017년부터 가동하고 관련 재정정보를 공개했다. 4차 계획(2019-2021)은 열린정부, 반부패 및 투명성 강화라는 표제 아래 개방형 데이터 정책의 수립, 계약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개방 정책 등의 효과적인 지식 공유, 투명성 등 공약을 제시하였다(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참조). 최근 5차 계획(2021-2023)은 영국의 개방형 정부 협력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영국의 재정정보공개는 월간 통계 및 결산 보고서 산출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OSCAR(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와 국가보조금정보시스템(GGIS: 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근간으로 한다.

〈그림 2-8〉OSCAR 화면



자료: www.data.gov.uk

OSCAR는 2013년에 구 시스템인 COINS(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를 대체하면서 개통하였다. 영국은 각 부처별,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COINS나 OSCAR는 결산 통합 재무 보고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COINS의 데이터는 예산보고서(Budget Report), 세출예산(Supply Estimates), 공공지출통계분석(Public Expenditure Analyses. PESA), 통합정부계정(Whole Government Accounts, WGA), 그리고 월간 공공부문 재정동향(Public Sector Finance) 발간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원천이며, 그 원본 데이터 역시 공개하고 있다.

COINS의 원본 데이터는 2010년 7월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OSCAR 역시 개통시점부터 공개되었다. COINS에서는 중앙부처 수준에서만 자료 조회가 가능하였다면, OSCAR에서는 하위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INS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각 부처별 연간보고서인 ARA(Annual Reports and Accounts) 작성이 OSCAR를 통해 이루어지고, 영국의 재정개혁에 따른 부처 간 회계 방식 통합을 반영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OSCAR는 중앙정부 부처가 이용 대상이다. 통합정부계정(WGA) 보고서를 제외하면 월간 공공부문 재정동향, 부처별 연간보고서와 공공지출통계분석(PESA)에 사용되는 자료 원천은 OSCAR로 통일하고 있다.

또한 OSCAR는 재무부에 공개 보고를 위한 핵심 관리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강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COINS의 공공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정부 간 프로젝트이다. 그 목적은 데이터 구조를 단순화하고, 검증을 개발하고, 제어 프로세스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지출액을 입력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공기업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도 입력해야 한다.

OSCAR의 데이터는 각 보고서 발간 시점 1주일 전에 추출해야 하고, 지방정부 데이터는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취합한다. 일부 공기업 및 비영리 공공기관의 지출은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별도로 취합해 통합의 과정을 거쳐 재정정보가 공시된다.

OSCAR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공해 표준화한 형태로, OSCAR 데이터베이스는 각 예산 및 지출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 또는 속성(key facts)을 가진다. 이러한 속성은 조직, 월, 계좌, 세부 항목(sub-segment) 등으로 구분되며, 각 속성은 관련 정보의 수준(dimension)을 가지고, 계층(main hierarchy)에 따라 세부 속성(attributes)으로 관리된다.

또한 OSCAR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예산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개되는 신뢰도가 높다. 예산 단계에서 작성되는 세출예산추계(Main and Supply Estimates)는 시계열의 일관성이 있으며, 과거 자료 역시 매우 정확하다. 각 부처의 프로그램(Programmes)이나 단위사업(Projects)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재정사업의 속성은 세부 항목(segment dimension)의 이름으로 관리한다. 세부 항목을 어떤 수준에서 입력할지는 소관 위원회(Select Committee)와의 협의 하에 부처 재량으로 결정하며, 서로 다른 부처의 세부 항목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금관리시스템(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 이하 GGIS)은 보조금 관련 재정정보 수집 및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에 개통되었으며, 2017년부터 건별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GGIS의 구축은 영국 정부가 2016년 수립한 내각사무처의 보조금 효율화 프로그램 및 보조금 표준 정책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보조금 효율화 프로그램은 각 부처의 보조금 지출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며, 정치적 로비, 예산사업 중복 및 사업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정보공개는 2014년 시작한 보조사업 등록대(Grants register)의 보조사업 목록공시에 그치고 있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어느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사업을 수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집되지 않는다. 개별 보조 사업들이 얼마나 중첩되는지, 개별 사업자들이 얼마나 반복, 부정 수급을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으며 개별 보조 사업에 대한 경쟁 정도 역시 파악되지 않고, 실제 보조 사업자를 경유한 보조금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사후 통제 및 검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GGIS를 구축해 부처 수준에서 신규 사업 도입이나 사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사업 관리자는 교부 및 사후 보고를 통일되게 수행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는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임명되는 선임책임자, 정책집행기관(Policy/ALB(Arms Length Bodies)),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회계감사원 등이 참여한다.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선임책임자(Senior responsible Officer, SRO)에게는 재무적 책임이, 각 집행관서 또는 집행기관에 집행 책임이 있고, SRO는 보조금 집행의 전 과정에 대한 재무적 책임이 있다. 재무부는 정책 개발, 사례 개발, 보조금 협정, 모니터링과 평가에 재무적 책임이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자문을 수행하며, 상무부는 협정 단계에서만 집행 책임이 있고 정책 개발, 사례 개발, 모니터링 단계에서 자문 책임을 진다. 법무부는 정책 개발, 사례 개발, 협정 단계에서 자문을 수행하고, 감사원은 협정, 모니터링 단계에서 자문을 수행한다.

보조금 사업의 승인에 이르기까지 각 의사결정점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를 받으며, 이 과정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정보시스템 GGIS에서 체크되고 검토 결과가 업로드된다. 사업 결정 과정뿐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의 실사, 위험평가 결과 등도 모두 GGIS에 업로드된다. 선정 결과 등의 데이터는 사업 중첩 여부, 수혜자 중복 수혜 여부 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영국 정부에서 GGIS를 통해 추출한 보조 사업 정보의 전체 리스트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되는데, 개별 보조금은 보조금 등록대 홈페이지(Grants Registe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은 gov.uk의 부처별 홈페이지에서도 검색된다.

25개 정부 부처와 385개 공공기관과 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약 2,000개의 웹 사

이트가 하나의 도메인(www.gov.uk)으로 통합되어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GGIS(<https://grantshub.civilservice.gov.uk/>)에 공개한다. 또한 정부 통합 홈페이지와 구글(Google)의 검색엔진을 연동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3. 독일

가. 법적 근거

1) 재정통계(공개) 관련 법령

가)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 / 개별 영역에 대한 통계법령

독일의 기본법 및 재정 관련 법률에서 우리 「국가재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재정정보의 공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기본법 제109a조 제3항 및 안정성위원회법에서 안정성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Beschlüsse und Berichte) 또는 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평가와 권고(Einschätzungen und Empfehlungen)에서 공개(Veröffentlichung)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입과 지출 및 채무 현황 등 재정정보공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다만 예산원칙법 제49b조는 재정통계 보고의무라는 제명 하에 연방과 주에 예산경제 유형과 관계없이 자신의 계획과 실제 데이터를 그룹 및 기능계획에 따라 최소한 3개의 목차로 구성해 제공해야 한다. 공공재정(Öffentliche Finanzen) 및 조세(Steuern)에 관한 정보는 연방 통계청 및 개별 주 통계청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표 2-1〉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의 주요 내용

연방 통계법	주 통계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계법 기준)
- 제1조: 연방목적의 통계 - 제2조: 연방 통계청 - 제3조: 연방 통계청의 사무 - 제3a조: 연방과 주 통계청의협력 - 제5a조: 행정 데이터의 이용 - 제6조: 연방통계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조치 - 제15조: 정보제공의무 - 제16조: 비밀유지 - 제17조: 연방 통계청의 초국가적, 국제적 사무	- 제1조: 주 통계의 원칙 - 제3조: 주 통계청 - 제5조: 통계작업의 위탁 - 제8조: 지방자치단체통계 - 제9조: 지방자치단체 통계기관 - 제10조: 조사기관 - 제11조: 조사담당관 - 제13조: 정보제공의무 - 제14조: 통계비밀 - 제15조: 주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로부터의 개별정보의 전송 - 제17조: 주정보시스템

독일 통계 관련 법령의 특징은 각각의 영역에 대한 통계에 관한 법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⁸⁾

- 인구 : 인구통계법(Bevölkerungstatistikgesetz)
- 건강 : 병원통계규정(Krankenhausstatistik-Verordnung)
- 소득, 소비 및 생활여건: 과다채무통계법(Überschuldungstatistikgesetz), 정보사회통계법(Informationsgesellschaftsstatistikgesetz)
- 해외무역: 해외무역통계법(Außenhandelsstatistikgesetz)
- 도매 및 소매: 상업거래통계법(Handelsstatistikgesetz)
- 건축: 건축통계법(Hochbaustatistikgesetz)
- 에너지: 에너지통계법(Energiestatistikgesetz)
- 서비스: 서비스통계법(Dienstleistungstatistikgesetz)

8) R. Sannwald, in: B. Schmidt-Bleibtreu / H. Hoffmann / A. Hopfauf, GG, 12. Aufl., 2011, § 73 Rn. 139.

- 급여: 급여통계법(Verdienststatistikgesetz)
 - 공공재정 및 공무원: 재정 및 공무원 통계법(Finanz- und Personalstatistikgesetz, 이하 재정통계법)
 - 조세: 조세통계법(Gesetz über Steuerstatistiken)
- 개별 영역에 대한 통계법은 자료 수집의 목적, 조사의 단위, 조사 및 통계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유럽법적 규정

1992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지하고자 마스트리흐트 조약⁹⁾을 체결한 이후 예산 감시의 정치적 비중과 국가재정의 영역에 있어 통계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보충해 국가재정통계규정(“Staatsfinanzstatistik-Verordnung” (EG) Nr. 3605/1993)이 제정되었고, 데이터 요청, 제공시간, 제공범위, 공개규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회원국들은 현재 매년 각각 4월 1일 및 10월 1일 전에 각국의 재정적자와 채무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1997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규정은 2011년 “Sixpack”¹⁰⁾을 통해 강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통계조사의 내용과 관련한 규정이 강화되고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 지침(Richtlinie 2011/85/EU)에 따른 추가적 데이터 요청과 유럽 예산 감시를 위한 데이터의 조작 및 부주의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벌금의 도입이다.

9) 2010년 그리스가 유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유럽재정위기 대응 수단으로 SGP를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때 5개 규칙과 1개 지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통칭해 ‘sixpack’이라 명명하였다.

10)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2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명하고 1993년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중앙은행 창설, 경제통화동맹,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사법·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 규정 준수도 이 조약의 일환이다.

나. 재정통계(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¹¹⁾

1) 재정통계(공개)의 범위

연방의 재정통계 데이터는 어떠한 수입이 공공부문 총예산에 포함되는지, 이를 통해 어떠한 지출이 조달되는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외부 재원 또는 예비비(Rücklage)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¹²⁾

재정통계법 제1조에 따르면 재정통계에는 세출과 세입 통계(Statistik der Ausgaben und Einnahmen),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Statistik des Steueraufkommens, der Hebesätze und der Umlagen), 채무 및 채무와 재정자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통계(Statistik über die Schulden, Sicherheiten für Schulden und Finanzaktiva)가 포함된다. 재정통계는 다음과 같다.

- 연방의 재정경제와 유럽공동체에 대한 재정할당분¹³⁾
- 주의 재정경제¹⁴⁾
- 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 및 게마인데연합)의 재정경제¹⁵⁾
-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연방노동청(Sozialversicherungsträger und 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재정경제¹⁶⁾
- 공법인 또는 유럽공동체로부터의 보조금이 해마다 16만 유로를 초과하는 학문,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법적, 독립적 단체의 재정경제와 연방과 주의

기관 및 학문,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다른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재정경제¹⁷⁾

- 연방은행(Deutschen Bundesbank)의 재정경제¹⁸⁾
- 공법적 또는 사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재정통계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Fonds), 기관 및 기업(Einrichtungen und Unternehmen)의 재정경제 및 공법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독립적이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 단위¹⁹⁾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목적조합(Zweckverband)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공법인의 재정경제²⁰⁾
- 사법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금, 기관, 기업의 경우에도 위 제1호부터 3호, 제5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조사 단위가 명목자본(Nennkapital) 또는 의결권(Stimmrecht)의 50% 이상 참여 가능한 경우 조사 단위에 포함²¹⁾
- 사법적 재단의 경우에도 -주된 직원을 통해 공공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제1문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조사 단위가 재단 정관 또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²²⁾

2) 통계에 포함되는 정보

연방과 주의 세출 및 세입 통계는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구분하고 있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이하의 내용은 재정통계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2)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Methoden der Finanzstatistiken–, 2021, S. 1.

13)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1호.

14)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2호.

15)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3호.

16)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5호.

17)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7호.

18)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8호.

19)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10호.

20)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2문.

21) 재정통계법 제2조 제3항 제1문.

22) 재정통계법 제2조 제3항 제2문.

연도별²³⁾ 세출 및 세입 통계는 개별계획(Einzelplan)과 장(또는 주제, Kapitel)에 따른 예산법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유형 및 각각의 확정된 그룹계획(Gruppierungsplan)과 기능계획(Funktionenplan)에 상응하는 사무 영역에 따른 분류 내에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항목, 개별계획(Einzelplan)과 장(또는 주제, Kapitel)으로 구분되는 예산법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유형 및 각각의 확정된 그룹별 계획과 기능별 계획에 상응하는 사무 영역에 따른 분류 내에서 예산회계(Haushaltsrechnung)에 따른 실제 수입과 지출, 단식부기회계(kameralistisches Rechnungswesen) 기관에 있어서 실제 수입과 지출, 기업회계(kaufmännisches Rechnungswesen) 기관에 있어서 -대학 및 대학병원으로부터 관리되지 않는 한- 현행 대학통계법상 규정된 분류 내에서의 대학 및 대학병원의 수입, 비용 및 투자지출 등을 포함한다.

분기별²⁴⁾ 세출 및 세입 통계는 개별적으로 확정된 그룹예산에 상응하는 재무 결과에 따른 실제 수입과 지출, 사무 영역에 다른 건축비용과 조정요구에 대한 연방의 상환, 단식부기회계(kameralistisches Rechnungswesen) 기관에 있어서 실제 수입과 지출, 상업회계(kaufmännisches Rechnungswesen) 기관에 있어서 -대학 및 대학병원으로부터 관리되지 않는 한- 현행 대학통계법상 규정된 분류 내에서의 대학 및 대학병원의 수입, 지출 및 투자지출 등을 포함한다.

월별²⁵⁾ 세출 및 세입 통계는 실제 수입과 지출의 총액과 예산원칙법 제39조 제2호의 의미상 재정적자(Finanzierungssaldo), 조세수입(Steuereinnahmen), 처분수익(또는 매각수익, Veräußerungserlöse), 인건비(Personalausgaben), 현행 현물 지출(laufender Sachaufwand), 이자지출(Zinsausgaben), 투자지출(Investitionsausgaben), 행정수입 및 지급(Einnahmen von und Zahlungen

23) 재정통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24) 재정통계법 제3조 제1항 제2호.

25) 재정통계법 제3조 제1항 제3호.

an Verwaltungen), 신용차입 및 상환(Aufnahme und die Tilgung von Kreditmarktmitteln), 연방과 주의 재무 상태(Kassenlage des Bundes und der Länder)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및 세입 통계는 연도별, 분기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²⁶⁾ 세출 및 세입 통계는 단식부기회계제도 적용에 있어 실제 수입 및 지출, 지방 복식부기회계의 적용에 있어 각각 재정통계를 위해 중요한 체계에 상응하는 생산그룹 또는 사무 영역과 유형에 따른 입금과 출금(Ein- und Auszahlungen)이 포함된다. 분기별²⁷⁾ 세출 및 세입 통계는 각각 재정통계를 위해 중요한 체계에 상응하는 유형에 따른 실제 수입과 지출 또는 입금과 출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과 출금 및 재정통계를 위해 중요한 체계에 상응하는 사무 영역 또는 생산그룹에 따른 건축(또는 공사) 조치(Baumaßnahme)를 위한 지출과 출금 등이 포함된다.

국가 및 지방의 기금, 기관 및 기업 등의 세출 및 세입 통계는 공법적 또는 사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1호부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Fonds), 기관 및 기업(Einrichtungen und Unternehmen)과 공법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독립적이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 단위에 있어서 통계는 해마다 다음의 수집 정보를 포함한다.²⁸⁾ 그 항목은 단식부기회계 적용에 있어서 실제 수입과 지출, 지방 복식부기회계 적용에 있어서 입금과 출금, 국가 복식부기회계 적용에 있어 실제 수입과 지출, 기업회계 적용에 있어 대차대조표(Bilanz), 손익계산서(Gewinn- und Verlustrechnung), 자산증명서(Anlagenachweise) 등이다.

연방과 주의²⁹⁾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연도별, 월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소득세 및 부가

26) 재정통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27) 재정통계법 제3조 제2항 제2호.

28) 재정통계법 제3조 제7항.

29) 재정통계법 제4조 제1호.

가치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할당분(Gemeindeanteil an der Einkommen- und Umsatzsteuer), 결산 결과에 따른 영업세분담금(Gewerbesteuerumlage), 월별 조세 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조세 유형에 따른 조세수입과 관세(Zöllen) 등이다.

지방자치단체³⁰⁾의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연도별, 분기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예산조례(Haushaltssatzung)에 명시된 물세의 세율(Hebesätze der Realsteuern), 6월 30일까지 결정된 세율의 변경, 일반 및 특별 분담금의 분담금률 등이며, 분기별 조세수입, 세율 및 분담금 통계는 조세 유형에 따른 조세수입이다.

채무 및 채무와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통계는 유럽규칙에 근간을 둔다. 유럽규칙(Verordnung (EG) Nr. 2223/96)의 부속서 A의 국가 영역에 포함되는 조사단위³¹⁾는 유럽규칙(Verordnung (EG) Nr. 2223/96)의 부속서 A의 국가 영역에 포함되는 재정통계법 제2조 제1항 제1문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단위의 채무, 채무 및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통계는 매년 12월 31일 다음의 수집 정보를 포함한다. 그 항목은 채무 상태, 보고된 전년도의 채무 상태, 증권(Wertpapier) 및 신용차입(Kredite)에 대한 채무 상태 및 보고된 전년도의 채무 상태, 공적 기업과 신용기관이 아닌 신용기관과 국내 기업 및 신용기관에 속하지 않는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채무 상태, 보증금 총액과 보고된 전년도의 보증금 총액, 증권 및 신용에 대한 현재 연도의 채무차입과 채무상환(Schuldenaufnahmen und Schuldentilgungen), 그 밖의 유가증권과 신용에 대한 현재 연도의 증가와 감소(Zu- und Abgänge), 채무 유형에 따른 채무인수(Schuldenübernahmen), 채무 및 청구권 유형에 따른 채무면제(Schuldenerlasse) 및 청구권의 포기(Verzicht auf Forderungen nach Schuld- und Forderungsarten), 유럽규칙(Verordnung (EG) Nr. 2223/96) 부속서 A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금융자산의 상태 등이다.

30) 재정통계법 제4조 제2호.

31) 재정통계법 제5조 제1호.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각 통계청 홈페이지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Genesis-Online Datenbank)

연방 통계청 및 각 주의 통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주제에 대한 통계자료와 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재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³²⁾ 및 바이에른주³³⁾,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³⁴⁾ 및 작센주³⁵⁾는 ‘Genesis-Online’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방과 주의 위임에 따른 통계 데이터베이스로서 독일 지역데이터베이스³⁶⁾가 존재한다. 지역데이터베이스는 상세한 지역적 분류 하에 국가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주제별로 크게 사회와 환경(Gesellschaft und Umwelt), 경제(Wirtschaft), 산업과 기업(B Branchen und Unternehmen), 노동(Arbeit), 국가(Staat)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와 환경’에는 인구(Bevölkerung), 교육, 연구 및 문화(Bildung, Forschung und Kultur), 소득, 소비 및 생활여건(Einkommen, Konsum und Lebensbedingungen), 건강(Gesundheit), 사회(Soziales), 환경(Umwelt), 교통사고(Verkehrsunfälle)로 구분되고, ‘경제’에는 무역(Außenhandel), 가격(Preise), 도매 및 소매(Groß- und Einzelhandel), 국민계정(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과 기업’에는 건축(Bauen), 에너지(Energie), 서비스(Dienstleistungen), 요식 및 숙박업과 관광(Gastgewerbe, Tourismus), 수공업(Handwerk), 산업 및 제조업(Industrie, Verarbeitendes Gewerbe), 농업·임업·어업(Land- und Forstwirtschaft,

32)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 <최근 접속일 : 2021.05.31>.

33) <https://www.statistikdaten.bayern.de/genesis/online> <최근 접속일 : 2021.05.31>.

34) <https://www.landesdatenbank.nrw.de/ldbnrw/online/> <최근 접속일 : 2021.05.31>.

35) <https://www.statistik.sachsen.de/genonline/online/logon> <최근 접속일 : 2021.05.31>.

36) <https://www.regionalstatistik.de/genesis/online> <최근 접속일 : 2021.05.31>.

Fischerei), 운송 및 교통(Transport und Verkehr), 기업(Unternehmen)이 포함되며, ‘노동’은 노동시장(Arbeitsmarkt), 인건비 및 임금부대비용(Arbeits- und Lohnnebenkosten), 급여(Verdienste)로 구분된다.

공공재정(Öffentliche Finanzen)과 조세는 언급한 카테고리 중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재정에 관한 영역에서는 ‘지출과 수입’, ‘기금, 기관 및 기업’, 채무와 재정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 프랑스

가. 법적 근거

국가 단위의 재정정보 공표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해당하는 ‘재정조직법(LOLF)’에 근거한 공표와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별도 법률에 의한 공표로 나눌 수 있다.

1) 재정조직법(LOLF)상 재정정보공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우리 「국가재정법」과 유사하게 ‘재정조직법(LOLF)³⁷⁾’이 있다. 이 법은 우리의 국가재정에 해당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직법률’이다. ‘조직법률’은 우리 법체계에는 없는 법령의 형식인데, 쉽게 표현하면 헌법과 법률 사이의 법령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적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이며, 일반 법률들 상위의 법령이다. 따라서 매년 법률의 형식

37)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재정법률들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으로 제정되는 ‘재정법률’(우리의 본예산에 해당)과 재정법률을 회계연도 중에 수정하는 ‘재정수정법률’(우리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및 ‘결산법률’은 이 재정조직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재정조직법도 예산을 통제할 뿐 아니라, 공화국의 재정운용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재정조직법(LOLF)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재정법률의 유형과 관할

제2편: 국가의 재원과 재정적 부담

제3편: 재정법률(예산, 추경 및 결산)의 구성

제4편: 재정법률의 심의·의결

제5편: 공공재정에 관한 정보 및 공공재정에 대한 통제

제6편: 본 조직법률의 시행과 적용

이 가운데 ‘공공재정에 관한 정보’를 규율하는 제5편은 다시 재정정보에 관한 제1장과 재정통제에 관한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국가재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재정조직법률 제5편의 제1장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 장은 제48조부터 제56조에서 각각 정부가 예산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 ‘재정조직법’은 재정정보에 관한 규율로서 예산 과정과 별도로 ‘공표’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 운용의 일상적 과정 가운데 예산 권한을 가진 각 권력 주체 간(정부가 의회)에 어떤 재정정보가 객관화되고 공유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재정정보를 종합한 보고서로는 예산안 제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50조에 따른 보고서와 이후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제48조에 따른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상 재정공표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안정·성장 협약(SGP)’ 등 재정건전성 감독 정책에 따라 2012년에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³⁸⁾이라는 별도의 조직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우리의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프랑스 정부는 우리의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공공재정 계획법률안’을 입안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법률은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계획법률안 자체에 담아야 할 내용을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중요한 재정정보가 ‘계획법률’의 형태로 공표된다. 이에 더해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은 정부의 의회의 이러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전문 위원회인 ‘공공재정 고등재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의회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의결하는 중기재정계획의 내용, 즉 전망과 운용계획을 분석해 이에 대한 위원회 자체의 의견을 공표한다. 이로써 정부와 의회는 전문 위원회로부터 객관적, 전문적 견제를 받으면서 재정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 재정정보가 계획법률의 내용으로 작성, 검증되고 공표된다. 그 내용과 범위는 아래에서 본다.

3) 지방재정의 정보 규율 법률

우리 법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재정에 관한 정보도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정부가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에 포함된다. 정부의 법률상 의무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할 의무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표하는 재정정보를 정부가 확보하는 과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정보를 정부가 작성한다.

프랑스 법체계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규율은 우리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아우르는 ‘지방단체 일반법전(CGCT³⁹⁾)’에 따른다. 이 법전은 총칙, 각 단계별 지방단체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고, 각 단계의 지방단체에 대해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지방단체의 재정 자율성의 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기초지방단체(꼬뮌)에 대해서는 ‘꼬뮌의 재정’에 관한 편 가운데 ‘예산과 회계’ 편의 ‘총칙’ 장에서 예산과 회계의 공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2313-1조에서 제2313-2조). 제2313-1조는 지방재정 예산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이 공표되어야 하는지 매우 상세히(우리 법령 체계로는 13개 항으로 구성)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1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단체 일반법전 제2313-1조 제11항

“시민들이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 재정정보를 종합적이고 간략히 설명한 자료가 예산안과 행정기관 회계 자료에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꼬뮌의 회계’에 관한 편에서 회계정보의 공개 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2341-1조)

지방단체 일반법전 법률 제2341-1조

꼬뮌의 회계는 꼬뮌 시장(우리의 기초단체장)에게 보고된다.
꼬뮌 회계는 법률 제2313-1조의 조건에 따라 공개된다.

38) loi organique 2012-1403 du 17 décembre 2012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et à la gouvernance des finances publiques, 공공재정 계획 및 거버넌스에 관한 2012년 12월 17일 조직법률 제2102-1403호.

39)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이러한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법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차 등 재정운용 과정상의 보고 의무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된다. 지방재정에 서도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공표 자체만을 별도의 제도로 두지 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재정정보공개의 포괄범위 및 주요 내용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랑스 재정정보의 공표 제도는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⁴⁰⁾에서 가장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제정되는 계획법률의 내용 범위가 곧 재정정보의 범위가 된다. 이 법률은 ‘공공재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프 랑스법상 용어로는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영역의 재정을 의미한다. 프랑 스법에서 공공행정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에 관한 용어이기 이전 에 공법 적용 영역과 사법 적용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행정 주체의 범위’ 를 결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재정과 관련해 공적 영역은 중앙 공공행정⁴¹⁾, 지방 공 공행정⁴²⁾과 사회보장행정⁴³⁾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 공공행정은 우리 법 용어로 하면 중앙행정기관과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된다. 다만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 관만을 뜻한다. 우리의 공공기관 구분으로 말하자면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지방행정은 지방단체와 지방 소속 공공기관으로 행정적 성격의 기관을 뜻하고, 사회보장행정은 사 회보험 등 금융성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공공재정 계획·거버넌 스 조직법률」에서 말하는 ‘공공재정’은 ‘일반정부’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0) loi organique 2012-1403 du 17 décembre 2012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et à la gouvernance des finances publiques, 공공재정 계획 및 거버넌스에 관한 2012년 12월 17일 조직법률 제2102-1403호.

41) 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42)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APUL.

43)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

프랑스의 국가재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조직법’에서도 비록 재정정보 공표 별도의 제도는 아니지만, 예산 절차 등에서 공표되는 재정의 범위는 ‘공공재정’을 말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반정부 범위의 재정정보가 국가 예산 절차상 정부가 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공표된다.

재정조직법 제48조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재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기회기의 4/4분기 중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해 국가경제의 전개 상황과 공공재정의 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이후의 경제 상황 분석
2.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경제 및 예산 정책 기초의 설명
3. 국가 자원 확보의 중기 전망 및 분야(grandes fonctions)별 지출 중기 전망
4. 차년도 예산법률안의 미션과 프로그램 목록(프로그램별 성과지표 포함) 안

이 보고서는 하원과 상원의 토론 안전이 될 수 있다.

재정조직법 제50조

당해 연도 예산법안에는 국가의 경제, 사회, 재정 상황 및 전망 보고서가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재정법안의 기초가 된 계획의 가정, 방안 및 분석 결과 등을 기술한다. 제8조 2항의 사업 효율 조항에 따라 전기 회계연 도 및 당기 회계연도의 프랑스의 대유럽연합 공약 시행에 필요한 예산 잔액 또는 재정 필요에 의한 예산 잔 액 처리 내역을 명시한다. 재정 법안 제출 이후 최소 4년간의 발전 전망,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 관련 프랑 스 할당 권장 사항 등 프랑스의 유럽 공약 관련 수입, 지출 및 잔액 등 국가 회계 협약에 따라 처리한 모든 공공 행정 하위 부문 상세 등을 명시해 보고한다. 이외 2012-12-17 조직법 2012-1403 제9조의 표기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총 의무 징수 명세 및 공공 지출 내역과 그 동향을 추적한다. 당해 연도 및 이후 2년간 의무 징수 및 정부 예측 관련 각 규정에 대한 입법 또는 규제 성격의 재정 평가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국가의 유럽식 국가 회계 및 지역 회계 관련 1996.06.25 국가참사원 규정(CE) 2223/96에 따라 지정된 기타 중앙 공공 행정기관과 국가의 재정 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기관의 지출 상세, 수입, 잔액, 부채 및 기타 재정 활동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동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타 사회 보장 공공 행정기관과 일반 기관의 지출, 수입, 잔액 및 부채 에 대해 보고한다.

보고서는 동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타 지역 공공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수입, 잔액 및 부채에 대해 보고한다.

전년도 회계 자료와 함께 국가 회계 관련 보고서가 본 부록에 포함된다.

본 보고서 관련 하위 및 상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재정조직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를 정부와 의회 간 예산 과정에서 정보 교류의 일환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즉, 우리 「국가재정법」이 예산 과정에서 첨부하는 자료와 별개로 재정정보의 공표를 별도 제도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정부가 의회에 재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의회가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때 보고서의 내용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포괄범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정(finances publiques)’으로 표현된다.

다. 재정정보 공개기제

프랑스의 재정정보공개 제도의 특징은 우리와 달리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자료 자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국민이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별도의 요약 브로슈어 등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하지만, 법상 공표 대상이 되는 재정정보의 내용은 공식적인 보고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기제 역시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재정정보만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의 행정정보 일반을 공개하는 사이트(www.data.gouv.fr)⁴⁴⁾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일종으로 재정정보에 관한 보고서 등 공식 문서가 게시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보 외에는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재무위원회’⁴⁵⁾ 홈페이지(<https://www.hcfc.fr>)가 있다. 여기서도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를 위해 별도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가 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를 위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표

준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재정정보가 본래 사용되는 법제도의 틀 안에서 작성, 유통되는 정보 자체가 공표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본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 과정에서 작성, 공개되는 자료 자체를 재정정보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국민을 위한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나 이를 위해 재정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본래 예산 과정상 유통되는 재정정보와 별개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정부회계의 발전을 통해 예산 구조 자체가 유의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발전하면 이 정보 자체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게 된다.

5. 종합

주요국의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에 관해 논의하기 전 한국의 실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정보는 개별 공개 포털(‘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하고 있다. 즉,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재정정보공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안 이유는 국가재정, 지방재정(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고,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정보 또한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정보에 국한해 열린재정에서 통합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자료는 검색하려면 개별 재정공개 포털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44)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는 (<https://www.data.gouv.fr/fr/pages/donnees-comptes-publics>).

45)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해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일원화)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또한 재정당국에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통계’ 작성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칙 규정의 일환으로, 제9조에 “정부가 공공재정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을, 각 기금관리 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

⑤ 제4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및 기금 운용 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에게 각

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0. 3. 31., 2020. 6. 9.>

자료: 법제처. 국가재정법

위와 같은 「국가재정법」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통계 작성의무가 신설되었다. 기존 「국가재정법」 9조는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할 의무를 규정했다. 반면에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재정공표 의무에 더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공표하는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무를 공공기관 전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다만 “금융을 다루는 기관”을 제외하되, 시장성이 없는 기관과 시장성이 있는 기관 모두를 공표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때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가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나목), 그 밖에 공영방송사·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다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통계작성 대상 기관이 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권한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 및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재정법의 목적에 따른 규율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해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 대상 기관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에 재정통계를 보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신설된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정정보공개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등에 규율을 받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재정정보(교육재정보함) 단위의 예산 및 보조금을 세부사업 단위(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 단위)를 연, 월 또는 일 단위⁴⁶⁾로 공개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국가재정법」 9조에 기초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온적이다. 또한 개별 공개 포털에 각각의 재정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되, 일부 재정정보에 한해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정보공개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법적 근거는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14) 등에 규율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국한해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2008년 이전에는 보조금 규모가 2만 5,000달러 이상인 사업만을 공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모든 보조금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위한 포털은 ‘USAspending’이 대표적이며, ‘재정데이터’와 ‘데이터 랩’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재정정보공개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법적 근거는 정보자유법(2005)에 규율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 단위를 포괄해 예산(프로그램 단위) 및 보조금(건별)을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 계약 및 조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중앙이 1만 파운드 이상, 지방이 500파운드 이상일 때 공개 대상이 된다. 정보공개를 위한 포털은 ‘data.gov.uk’가 대표적이며, 중앙재정을 관장하는 ‘OSCAR’와 보조금을 관장하는 ‘GGIS’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정보공개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법적 근거는 연방 통계법과 주 통계법이다. 포괄범위는 연방 및 주정부 단위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연, 분기, 월 단위로 각각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연방 및 각 주 통계청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정보공개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법적 근거는 재정조직법(LOLF)/조직법률(중앙)과 지방단체 일반법전(지방) 등에 규율을 받고 있으며, 일반정부 단위를 포괄범위로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예산 및 결산 과정의 모든 문서를 공

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위한 별도의 공개 플랫폼은 없으나 정부행정정보 공개 사이트와 고등재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주요국 정보공개 종합

구분	정보공개 법적 근거	정보공개 포괄범위, 공개단위	정보공개 주기	정보공개 기제
한국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중앙, 지방(교육재정) 단위 - 예산(세부사업) - 보조금(분야, 내역사업)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 (신설, '20.7~)	연, 월, 일 단위	열린재정(지방포함)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미국	연방재정책임성 및 투명 성에 관한 법률(2006) 정부자금책임성에 관한 법률(2008)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2014)	• 연방정부 단위 -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 보조금(2008년 이전 \$25,000 이상, 현재 모든 자금 집행)	연, 월 단위	USAspending 재정데이터 데이터랩
영국	정보자유법(2005)	• 공공부문 단위 - 예산(프로그램) - 보조금(건별) - 계약 및 조달(중앙 1만 £ 지방 500 £ 이상 건별)	월 단위	data.gov.uk(공공부 문) OSCAR(중앙재정) GGIS(보조금)
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	• 연방 및 주정부 단위 - 예산 및 결산 -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	연방 통계청 및 주 통계청 홈페이지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LOLF) / 조직법률 (지방)지방단체 일반법전	• 일반정부 단위 -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	공식 예·결산 절차	별도 플랫폼 없음 행정정보 공개사이트 www.data.gouv.fr 고등재정위원회 www.hcftp.fr

주 미국의 경우 정보 표준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OMB 지침)
자료 저자 작성

4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해 일별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Ⅲ. 주요국 비교분석에 근거한 정보공개 방향성 설정

지금까지 주요국의 재정정보공개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재정정보 표준화를 위한 OMB 지침도 있음), 연방정부 단위의 예산 및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공공부문 단위(공공부문 통합 재무제표 작성)의 예산 및 보조금, 계약 및 조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에 근거해 연방 및 주 정부 단위의 예산 및 결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조직법(LOLF) 등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정부 단위를 포괄범위로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예·결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재정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 행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정보공개를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관념화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의미 없는 재정정보를 산출(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 재정정보공개 방향성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은 포괄범위,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공개기제로 구분해 설명한다. 포괄범위는 통상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부 단위(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를 의미한다. 공개단위는 예산 및 결산 또는 보조금 등을 어떤 사업 단위(프로그램 단위 또는 세부사업 단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공개주기는 어떤 주기(연, 월, 일 단위)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의미하며, 공개기제는 어떤 경로(개별 플랫폼 또는 통합 공개 플랫폼)를 활용해 공개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가. 포괄범위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포괄범위의 설정이다. 즉, 재정정보공개 단위를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분절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포털에 중앙, 지방, 교육재정을 포괄해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공개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2020)에 따르면, 열린재정에 공개되는 정보가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현 시점에서 일관성을 다시 검토해 봐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 2021년 6월 기준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공히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은 2021년까지 공개하고 있다. ‘열린재정’에서 수지와 채무는 2020년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지방재정365’와 ‘교육재정알리미’에서 수지와 채무는 2019년까지 공개하고 있다. 한편 열린재정에서 공개하고 있는 2020년 기준 국가채무(D1) 규모는 846.9조 원이다. 846.9조 원은 중앙정부 채무 819.2조 원과 지방정부 순채무 27.7조 원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다면 지방정부 순채무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 순채무는 0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치마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 지방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공개 연도는 일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열린재정’에 공개되는 국가채무(D1)는 지방 순채무를 이미 적용해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논리를 비약하면, 단순 통합 정보라고 보기에 제약이 있다(정성호, 2020).

〈표 3-1〉열린재정_우리나라 재정현황 공개 목록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수입(국가예산 총수입, ~2021) 지출(국가예산 총지출, ~2021) 수지(통합, 관리재정수지, ~2020) 채무(D1, ~2020)	세입(전국 세입예산, ~2021) 세출(전국 세입예산, ~2021) 수지(전국 지방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채무, ~2019) 재정여건(재정자주도, ~2021)	세입(지방교육재정세입, ~2021) 세출(지방교육재정세출, ~2021) 수지(지방교육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교육채무, ~2019) 재정여건(교육재정자주도, ~2021)

자료: 정성호(2020). p.22에 기초해 재작성; 원자료: 열린재정_우리나라 재정현황(접속일: 2021.6.23.)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재정통계작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단위(institutional unit)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기준의 통계(GFS, PSDS)를 작성하기 위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2〉와 같다. 아래 〈표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류는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포괄범위인데,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계작성과 정보공개라는 목적은 다르지만 분류 기준(동일한 포괄범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각주 46 참고〉).

〈표 3-2〉일반정부와 공공부문 포괄범위

		일반정부	공공부문
중앙	회계 (20)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4개, 기업특별회계 5개	좌동
	기금 (67)	정부관리기금 46개, 공공기관관리기금 21개	좌동
	비영리공공기관 (222)	원가보상률 50% 이하, 정부판매비율 80% 이상인 222개 기관	좌동
	비금융공기업 (111)		비금융공기업 111개
지방	회계 (2,285)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771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공기업특별회계 254개	좌동
	기금 (2,468)	지방재정법 대상 2,468개	좌동
	비영리공공기관 (95)	원가보상률 50% 이하, 정부판매비율 80% 이상인 95개 공사·공단	좌동
	비금융공기업 (56)		비금융 공기업 56개

자료: 기획재정부(2020). ‘FY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기초해 저자 작성

이제 포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등 개별 기관단위별로 통계를 생산하되, 일부 재정지표를 선정해 열린재정에 공개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제9조에 근거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로 포괄범위를 확장해 열린재정에 공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은 공공부문을 포괄범위로, 독일과 프랑스는 일반정부 단위로 포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비금융 공기업 포함)까지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정부 단위를 공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통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설령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어 정보를 제출받았다고 해도 이를 가공해 공개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일반정부 단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 방법은 우선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단기적 대안)한 후 일반정부 단위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필요시 공공부문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장기적 대안).⁴⁷⁾

나. 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단위는 예산 및 보조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예산 및 보조금에 추가해 계약 및 조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명시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은 모든 사업을 공개하지만 2008년 이전에 2만 5,000달러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공개하였고, 영국의 계약 및 조달의 경우 중앙정부는 1만 유로(£), 지방정부는 500£ 이상만 공개하고 있다. 예산 단위는 프랑스를 제외하고(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주기 또한 주요국 모두

47)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은 국제 기준(GFS, PSDS)의 재정통계(D2, D3) 작성 기준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듯 국제 기준의 재정통계작성의 범주를 활용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재정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요구권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연,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연, 월, 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은 현재와 같이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로 공개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모든 재정정보를 공개한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주기는 현행대로 연, 월, 일 단위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일 단위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에 예산사업의 일 단위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일 단위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다. 공개기제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프랑스를 제외하고(별도 정보공개 플랫폼이 없고,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서가 공개 대상) 정보공개 포털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린재정 등 개별 시스템별로 정보공개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재정지표를 열린재정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열린재정에 연계 통합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기존 개별 정보공개 포털은 불가피하게 유지하되,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열린재정(통합재정공개플랫폼)에 집계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⁴⁸⁾ 현재와 같이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재정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별 재정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연계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이른바 ‘표준연계 가이드라인’)⁴⁹⁾ 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2020).

48) 차세대 bBrain 및 e-호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 중 하나가 재정정보의 연계통합이다.

49) 미국 OMB 지침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2. 정책적 함의

과거와 달리 정부 재정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제출해 재정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정보공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보공개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일정 부분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통합해 열린재정에 나열식으로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은 단일 공개 플랫폼에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재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방식 또는 기제를 활용해 재정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재정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선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및 기제와 2020년 개정된「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보공개와 통계작성을 위한 담론을 제시해 본다.

가. 정보공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실태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일 단위 세부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⁵⁰⁾ 주요국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예산 및 보조금의 모든 사업을 건별로 공

50) 정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정보공개 개선은 물론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법률 개정(2016년 및 2017년 12월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개편으로 예산·기금의 세입·세출 운용 상황은 월별, 단위사업별 공개('15.7~)에서 일별, 세부사업별('18.7~)로 공개하고 있으며, 세출 사업 설명 자료는 단위사업별 공개('17.4~)에서 세부사업별('18.7~)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법률 개정과는 무관하게 예산 정보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18.2~)으로, 목에서 세목('19.3~)으로 정보공개기준을 세분화하였다.

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의 건별 정보공개가 실익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담론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단순 통합 나열식 정보공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단기적 대안)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일반정부 단위에 전면 적용하면 된다(필요시 공공부문 단위까지 확장).

둘째, 현재와 같이 예산 및 보조금을 세부사업 단위, 연, 월, 일 단위로 공개하되, 보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24와 차별화된 정보를 공개하고(보조사업 위주), 미래지향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속성 정보에 더해 수혜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 예가 바로 영국의 The 360Giving data standard이다(정성호, 2020).⁵¹⁾

셋째, 기존 개별 정보공개 포털은 유지하되,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열린재정(통합재정공개플랫폼)에서 집계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궁극적으로는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인데, 미국·영국 등과 같이 단일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나. 재정통계 작성

정보공개를 위해 재정통계작성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2020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통계작성, 자료제출요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통계 작성 대상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일반정부 단위로 재

51) 360Giving data는 보조사업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로직으로 보조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rantNav는 보조사업자, 수혜자, 보조사업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정성호, 2020).

정통계를 작성할 것인지? 공공부문 단위까지 재정통계를 작성할 것인지?).

이에 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위한 목적인지? 재정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 단위의 정보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약이 크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단위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자료제출요구권에 기초해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공공부문 단위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즉, 어떤 재정정보를 어떻게 제출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현재에도 재정당국이 국제기구에 재정통계(GFS, PSDS)를 편제해 제출(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통계작성 대상 기관을 동일한 범주로 인식해 기관을 지정하면 된다(〈부록1, 2, 3〉참고). 기관이 지정되면 ‘자료제출요구권’에 기초해 재정자료를 제공받으면 되는데, 이때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제출할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출받을 정보를 지정하고, dBrain(e-호조 포함)을 사용하는 기관과 사용하지 않는 기관 등을 구분해 이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템플릿(template)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IV. 결론

2020년 정부는 데이터3법을 개정하였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재정정보 연계 활용 및 정보공개를 통해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재정정보의 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된 재정정보를 활용해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관서(부처)별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개별 공개 플랫폼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해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 재정지출 경로를 포함해 수혜자 정보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재정지출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통계작성’과 ‘자료제출요구권’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재정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분절적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정정보를 어디까지(포괄범위), 어떻게(공개단위 및 공개주기, 공개기제) 공개할 것인지?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재정통계작성은 어떤 범주(일반정부, 공공부문)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공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요국 법·제도 및 기제를 비교·분석해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정보공개체계를 유지하되, 일반

정부 단위의 정보공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후 일반정부 단위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공공부문으로 확장). 둘째, 예산(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내역사업 단위)은 연, 월 또는 일 단위로 공개하되, 보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공개, ‘보조금24’와 차별화된 정보를 공개하고(보조사업 위주), 속성 정보에 수혜자 정보를 포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개별 정보공개 포털은 유지하되, 개별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열린재정(통합 재정공개플랫폼)에 집계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이 단일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국가재정법」에 기초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재정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관한 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통계 목적과 정보공개 목적을 동일한 범주(예, 일반정부)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아울러 재정정보공개를 구체화하기 위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0).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 보도자료’(2020.12.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재정법 등)
 정성호 (2020).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대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서, 재정정보분석 20-08.
 독일, Bundesstatistikgesetz(연방 통계법)
 독일, Degenhatt, Christoph, in: Sachs, Michael, GG, 7. Aufl., 2014, § 73.
 독일, Finanz- und Personalstatistikgesetz(재정 및 공무원 통계법)
 독일, Grundgesetz(기본법)
 독일, Haushaltsgrundsatzgesetz(예산원칙법)
 독일, <https://www.landesdatenbank.nrw.de/ldbnrw/online/>(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Genesis-Online Datenbank)
 독일, <https://www.regionalstatistik.de/genesis/online> (지역 데이터베이스)
 독일, <https://www.statistik.sachsen.de/genonline/online/logon>(작센주 Genesis-Online Datenbank)
 독일, <https://www.statistikdaten.bayern.de/genesis/online>(바이에른주 Genesis-Online Datenbank)
 독일,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 (연방Genesis-Online Datenbank)
 독일, Jarass, Hans D. / Pierroth, Bodo, GG, 14. Aufl., 2016, § 73.
 독일, Landesstatistikgesetz – Baden-Württemberg(바덴-뷔텐베르크주 통계법)
 독일, Sannwald, Rüdiger in: Schmidt-Bleibtreu, Bruno / Hoffmann, Hans / Hopfauf, Axel, GG, 12. Aufl., 2011, § 73.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Methoden der Finanzstatistiken-, 2021.

독일, von Lewinski, Kai / Burbat, Daniela,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Haushaltsgrundsatzgesetz – HGrG), 1. Aufl., 2013.

미국, 「2006년 연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2008년 정부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Government Funding Transparency Act of 2008)」

미국, 「2014년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DATA Act) of 2014, Pub. L, 113-101)」

미국, GASB(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https://www.gasb.org/home>

미국, 연방정부 관보 공시 사이트 (<https://www.govinfo.gov>)

미국, 인구조사국(<https://www.census.gov>)

미국, 재무부 재정데이터 검색 및 API 자료실(<https://fiscaldata.treasury.gov>)

미국, 재정정보 데이터 랩(<https://datalab.usaspending.gov/>)

미국, 통합재정정보시스템(<https://www.usaspending.gov/>)

영국, Data.gov.uk

영국, HM Treasury, 2017.

영국,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england.do

영국, UK Cabinet Office, 2020.

영국, UK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2016-18.

프랑스, 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프랑스,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

프랑스,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APUL.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프랑스, <https://www.data.gouv.fr/fr/pages/donnees-comptes-publics>

프랑스, loi organique 2012-1403 du 17 décembre 2012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et à la gouvernance des finances publiques, 공공재정 계획 및 거버넌스에 관한 2012년 12월 17일 조직법률 제2102-1403호.

프랑스,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재정법률들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부 록 1〉 중앙정부_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포괄범위(2019년 기준)

구분	내 용
일반회계	55개 중앙관서 중 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 특허청 제외(53개)
특별회계 (19개)	1.교도작업특별회계, 2.교통시설특별회계, 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등기특별회계, 7.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8.양곡관리특별회계, 9.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우체국예금특별회계, 12.우편사업특별회계, 1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4.조달특별회계, 15.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7.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환경개선특별회계, 1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금 (67개)	1.고용보험기금, 2.공공자금관리기금, 3.공무원연금기금, 4.공적자금상환기금, 5.과학기술진흥기금, 6.관광진흥개발기금, 7.국민건강증진기금, 8.국민연금기금, 9.국민체육진흥기금, 10.국유재산관리기금, 11.국제교류기금, 12.국제질병퇴치기금, 13.군인복지기금, 14.군인연금기금, 15.근로복지진흥기금, 16.금강수계관리기금, 17.기술보증기금, 18.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남북협력기금, 20.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3.농어업재해재해보험기금, 24.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5.농지관리기금, 26.대외경제협력기금, 27.무역보험기금, 28.문화예술진흥기금, 29.문화재보호기금, 30.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1.방송통신발전기금, 32.범죄피해자보호기금, 33.보훈기금, 34.복권기금, 35.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6.사법서비스진흥기금, 37.사학진흥기금, 38.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9.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석면피해구제기금, 42.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3.수산업발전기금, 44.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5.신용보증기금, 46.양곡증권관리기금, 47.양성평등기금, 48.언론진흥기금, 49.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0.영화발전기금, 51.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2.외국환평형기금, 53.원자력기금, 54.응급의료기금, 55.임금채권보장기금, 56.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7.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9.전략산업기반기금, 60.정보통신진흥기금, 61.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2.주택도시기금, 63.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4.지역신문발전기금, 65.청소년육성기금, 66.축산발전기금, 67.한강수계관리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222개)	1.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게임물관리위원회, 4.경제인문사회연구회, 5.공무원연금공단, 6.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7.과학기술정책연구원, 8.국가과학기술연구회, 9.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1.국립공원공단, 12.국립광주과학관, 1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4.국립대구과학관, 15.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6.국립부산과학관, 17.국립생태원, 18.국립해양박물관, 19.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국민건강보험공단, 21.국민연금공단, 22.국방과학연구소, 23.국방기술품질원, 24.국방전직교육원, 25.국제방송교류재단, 26.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7.국토연구원, 28.근로복지공단, 29.기술보증기금, 30.기초과학연구원, 31.남북하나재단, 32.노사발전재단, 33.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3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5.농업기술실용화재단, 36.농업정책보험금융원, 37.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9.대외경제정책연구원, 4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대한법률구조공단, 42.대한장애인체육회, 43.도로교통공단, 44.독립기념관, 45.동북아역사재단, 46.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7.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8.사회보장정보원, 49.산업연구원, 50.세만금개발공사, 51.서민금융진흥원, 52.세종학당재단, 5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4.시청자미디어재단, 55.식품안전정보원, 56.신용보증기금, 57.신용보증재단중앙회, 58.아동권리보장원, 59.아시아문화원, 60.여수광양항만공사, 61.영상물등급위원회, 62.영화진흥위원회, 63.예금보험공사, 6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5.우체국물류지원단, 66.울산과학기술원, 67.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68.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69.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0.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71.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72.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73.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74.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표 계속)

구분	내 용
비영리 공공기관 (222개)	75.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6.재단법인 한식진흥원, 77.재외동포재단, 78.전략물자관리원, 79.정보통신산업진흥원, 80.정보통신정책연구원, 81.정부법무공단, 82.(주)위터웨이플러스, 8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5.창업진흥원, 86.축산물품질평가원, 87.태권도진흥재단, 88.통일연구원, 89.학교법인한국폴리텍, 90.한국개발연구원, 91.한국건강가정진흥원, 92.한국건강증진개발원, 93.한국건설기술연구원, 94.한국고용정보원, 95.한국고전번역원, 96.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97.한국공정거래조정원, 98.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9.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1.한국과학창의재단, 102.한국광해관리공단, 103.한국교육개발원, 104.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5.한국교통연구원, 106.한국국방연구원, 107.한국국제교류재단, 108.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9.한국국제협력단, 110.한국기계연구원, 111.한국기상산업기술원, 112.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3.한국나노기술원, 114.한국노동연구원, 115.한국도인인력개발원, 116.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17.한국농어촌공사, 118.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9.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20.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21.한국디자인진흥원, 122.한국로봇산업진흥원, 123.한국무역보험공사, 124.한국문화번역원, 125.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6.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7.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8.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29.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0.한국법제연구원, 131.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4.한국보건의료연구원, 135.한국사학진흥재단, 13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7.한국산림복지진흥원, 138.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9.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0.한국산업단지공단, 14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2.한국산업인력공단, 143.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4.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5.한국세라믹기술원, 146.한국소비자원, 147.한국수목원관리원, 148.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 149.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50.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1.한국식품연구원, 152.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3.한국언론진흥재단, 154.한국에너지공단, 155.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6.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57.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8.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9.한국연구재단, 160.한국영상자료원, 161.한국예술인복지재단, 16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3.한국원자력안전재단, 16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5.한국원자력환경공단, 166.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67.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8.한국약품안전관리원, 169.한국인터넷진흥원, 170.한국임업진흥원, 171.한국자산관리공사, 172.한국장애인고용공단, 173.한국장학재단, 174.한국재정정보원, 175.한국저작권보호원, 176.한국저작권위원회, 177.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78.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9.한국정보화진흥원, 180.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1.한국지식재산보호원, 182.한국지식재산연구원, 183.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5.한국천문연구원, 186.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7.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88.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9.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90.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1.한국콘텐츠진흥원, 192.한국특허정보원, 193.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4.한국학중앙연구원, 195.한국한의약진흥원, 196.한국한의학연구원, 197.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8.한국항로표지기술원, 199.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한국해양조사협회, 202.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3.한국행정연구원, 204.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5.한국화학연구원, 206.한국환경공단, 207.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8.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9.항공안전기술원, 210.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11.환경보건협회, 212.(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13.(재)APEC기후센터, 214.(재)국악방송, 215.(재)예술경영지원센터, 216.(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17.(재)중소기업연구원, 218.(재)축산환경관리원, 219.(재)한국문화정보원, 220.(재)한국보육진흥원, 221.(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22.(재)한국장애인개발원

〈부 록 2〉 지방자치단체_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포괄범위(2019년 기준)

(표 계속)

구분	내 용
비금융 공기업 (111개)	1.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강원대학교병원, 3.경북대학교병원, 4.경북대학교치과병원, 5.경상대학교병원, 6.광주과학기술원, 7.국가평생교육진흥원, 8.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9.국립박물관문화재단, 10.국립암센터, 11.국립중앙의료원, 12.국민체육진흥공단, 13.국제식물검역인증원, 14.그랜드코리아레저(주), 15.대한석탄공사, 16.대한적십자사, 17.대한체육회, 18.부산대학교병원, 19.부산대학교치과병원, 20.부산항만공사, 21.서울대학교병원, 22.서울대학교치과병원, 23.선박안전기술공단, 2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에너지경제연구원, 26.울산항만공사, 27.인천국제공항공사, 28.인천항만공사, 29.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0.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1.전남대학교병원, 32.전북대학교병원, 33.전쟁기념사업회, 3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제주대학교병원, 36.주식회사 강원랜드, 37.주식회사 공영홈쇼핑, 38.주식회사 에스알, 39.(주)중소기업유통센터, 40.주택관리공단(주), 41.(주)한국가스기술공사, 42.(주)한국건설관리공사, 43.충남대학교병원, 44.충북대학교병원, 45.코레일관광개발(주), 46.코레일네트웍스(주), 47.코레일로지스(주), 48.코레일유통(주), 49.코레일테크(주), 50.한국가스공사, 51.한국가스안전공사, 52.한국감정원, 53.한국공항공사, 54.한국과학기술원, 55.한국관광공사, 56.한국광물자원공사, 57.한국교육과정평가원, 58.한국교통안전공단, 59.한국국토정보공사, 60.한국기술교육대학교, 61.한국남동발전(주), 62.한국남부발전(주), 63.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64.한국도로공사, 65.한국동서발전(주), 66.한국마사회, 67.한국문화재단, 68.한국문화진흥(주), 69.한국발명진흥회, 70.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1.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7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3.한국사회복지협의회, 74.한국산업기술시험원, 75.한국상하수도협회, 76.한국서부발전(주), 77.한국석유공사, 78.한국석유관리원, 79.한국소방산업기술원, 80.한국수력원자력(주), 81.한국수자원공사, 82.한국송강기안전공단, 83.한국시설안전공단, 84.한국어촌어항공단, 85.한국원자력연구원, 86.한국원자력의학원, 87.한국잡월드, 88.한국전기안전공사, 89.한국전기연구원, 90.한국전력거래소, 91.한국전력공사, 92.한국전력기술(주), 93.한국조폐공사, 94.한국중부발전(주), 95.한국지역난방공사, 96.한국철도공사, 97.한국철도시설공단, 98.한국체육산업개발(주), 99.한국토지주택공사, 10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1.한전KDN(주), 102.한전KPS(주), 103.한전원자력연료(주), 104.해양환경공단, 105.(재)국제원산지정보원, 106.(재)예술의전당, 107.(재)우체국시설관리단, 108.(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9.88관광개발(주), 110.EBS, 111.KBS

자료: 기획재정부(2020). ‘FY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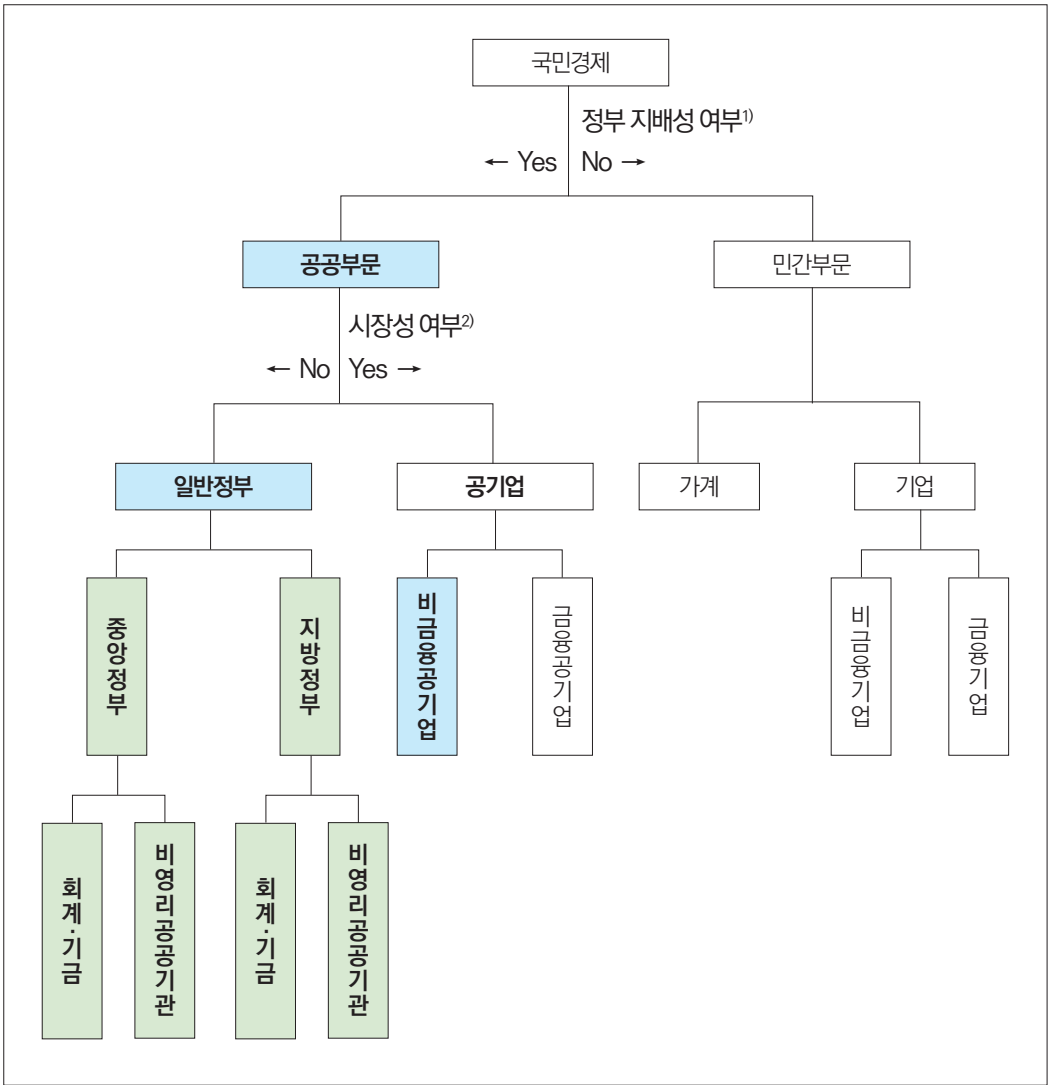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일반회계 (243개)	광역시·도 17개, 기초 시·군·구 226개(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기타 특별회계 (1,771개)	자치단체별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	
직영공기업 특별회계 (254개)	상수도 122개, 하수도 102개, 공영개발 29개, 운송 1개 지역개발기금은 '17.1.1.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기금 (2,468개)	노인, 청소년,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특정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	
교육비 특별회계 (17개)	광역시·도 17개 교육비 특별회계	
비영리 공공기관 (95개)	공사 (10)	1.대구도시철도공사, 2.광주도시철도공사, 3.대전도시철도공사, 4.안양도시공사, 5.시흥도시공사, 6.군포도시공사, 7.구리도시공사, 8.포천도시공사, 9.의왕도시공사, 10. 과천시공사
	공단 (85)	11.서울시설공단, 12.종로구시설관리공단, 13.중구시설관리공단, 14.용산구시설관리공단, 15.성동구도시관리공단, 16.광진구시설관리공단, 17.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8.종로구시설관리공단, 19.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강북구도시관리공단, 21.도봉구시설관리공단, 22.노원구서비스공단, 23.은평구시설관리공단, 24.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5.마포구시설관리공단, 26.양천구시설관리공단, 27.강서구시설관리공단, 28.구로구시설관리공단, 29.금천구시설관리공단, 30.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1.동작구시설관리공단, 32.관악구시설관리공단, 33.강남구도시관리공단, 34.송파구시설관리공단, 35.강동구도시관리공단, 36.부산시설공단, 37.부산환경공단, 38.부산지방공단스포원, 39.기장군도시관리공단, 40.대구시설공단, 41.대구환경공단, 42.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43.인천시설공단, 44.인천환경공단, 45.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46.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47.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8.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49.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50.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51.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52.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53.광주환경공단, 54.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55.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6.울산시설공단, 57.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58.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59.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60.울주군시설관리공단, 61.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62.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63.파주시시설관리공단, 64.양주시시설관리공단, 65.안성시시설관리공단, 66.오산시시설관리공단, 67.여주시시설관리공단, 68.가평군시설관리공단, 69.연천군시설관리공단, 70.이천시시설관리공단, 71.김포시시설관리공단, 72.동해시시설관리공단, 73.속초시시설관리공단, 74.영월군시설관리공단, 75.정선군시설관리공단, 76.청주시시설관리공단, 77.단양관광관리공단, 78.충주시시설관리공단, 79.보령시시설관리공단, 80.천안시시설관리공단, 81.부여군시설관리공단, 82.아산시시설관리공단, 83.전주시시설관리공단, 84.여주시도시관리공단, 85.포항시설관리공단, 86.안동시시설관리공단, 87.구미시설공단, 88.문경관광진흥공단, 89.경주시시설관리공단, 90.창원시설공단, 91.창원경륜공단, 92.양산시시설관리공단, 93.창녕군시설관리공단, 94.밀양시시설관리공단, 95.사천시시설관리공단

(표 계속)

구분	내 용	
비금융 공기업 (56개)	공사	1.서울주택도시공사, 2.서울농수산물공사, 3.서울에너지공사, 4.서울교통공사, 5.부산 교통공사, 6.부산도시공사, 7.부산관광공사, 8.대구도시공사, 9.인천교통공사, 10.인천도 시공사, 11.인천관광공사, 12.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김대중컨벤션센터, 14.대전도시공 사, 15.대전마케팅공사, 16.울산도시공사, 17.세종도시교통공사, 18.경기도시공사, 19.경기 관광공사, 20.경기평택항만공사, 21.고양도시관리공사, 22.용인도시공사, 23.안산도시공 사, 24.남양주도시공사, 25.평택도시공사, 26.화성도시공사, 27.광주시관리공사, 28.김포 도시공사, 29.구리농수산물공사, 30.하남도시공사, 31.성남도시개발공사, 32.수원도시공 사, 33.부천도시공사, 34.광명도시공사, 35.양평공사, 36.강원도개발공사, 37.춘천도시공 사, 38.강릉관광개발공사, 39.충북개발공사, 40.충청남도개발공사, 41.당진항만관광공사, 42.전북개발공사, 43.장수한우지방공사, 44.전남개발공사, 45.경상북도개발공사, 46.영양 고추유통공사, 47.경상북도관광공사, 48.경상남도개발공사, 49.통영관광개발공사, 50.함안 지방공사, 51.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2.김해시도시개발공사, 53.청도공영사업공사, 54.제 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5.제주관광공사, 56.제주에너지공사

자료: 기획재정부(2020). ‘FY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참고 4.

〈부 록 3〉 일반정부와 공기업 구분 개념도



주: 1) 정부 지배성 여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PSDS, GFSM 기준)
 2) 시장성 여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SNA2008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20). ‘FY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p.9.

주요국 재정정보공개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발간월 2021년 11월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인쇄처 디자인아이 Tel. 02-6358-2124

ISBN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02-6908-8567

jazzsh@kpfis.or.kr

